부 록

공군 블랙이글스

특별부록

1. 군 적폐청산위원회 활동 결과 222
2.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경과 및 평가 227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지원 231
4. 독일 6·25 전쟁 의료지원국 포함 236

일반부록

1. 주변국 군사력 현황 240
2. 세계 주요 국가의 국방비 현황 242
3. 연도별 국방비 현황 243
4. 남북 군사력 현황 244
5. 남북 경제지표 현황 245
6.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현황 246
7. 북핵 문제 관련 주요 비핵화 합의 247
8.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248
9. 남북 군사관계 일지 261
10. 북한의 대남 침투·국지도발 일지 267
11. 연합·합동연습 및 훈련 현황 269
12. 국제 방산협력협정 체결 현황 270
13.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271
14.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276
15.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개최 기념 한미 공동발표문 281
16.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283
17.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규모 285
18. 국방협력협정 체결 현황 287
19. 국제 군축 및 비확산 협약 및 기구 288
20. 우리 군의 해외파병 현황 291
21. 병사 봉급 변화 추이 292
22. 현역병 복무기간 변천 293
23. 국방기구도 294
24. 국방부 소관 법령 정비 현황 296
25. 국회 국방위원회 구성 및 주요 활동 306

특별부록 1

군 적폐청산위원회 활동 결과

1. 군 적폐청산위원회 운영 및 성과

새 정부의 개혁과제 1호인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나 공직자 개개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국정농단 사건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공적 가치와 공공성의 복원, 국민 신뢰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적폐청산은 우리 사회를 아주 불공정하게, 또 불평등하게 만들었던 많은 반칙과 특권들을 일소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적폐청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적폐청산위원회는 위원 선정, 과제 선정, 논의, 결론 도출 및 이행계획 입안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부처 자율적으로 진행되었다. 2017년 9월 25일 출범한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2018년 2월 28일까지 약 5개월간 활동하면서 군의 잘못된 관행과 비리를 점검하고 개선함으로써 불공정한 반칙과 특권을 근절하고 정의롭고 신뢰받는 군 문화 조성에 기여하였다.

| 군 적폐청산위원회 운영 | 위원회는 1997년 청소년보호위원회 초대위원장을 역임한 강지원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감사, 법무, 인권 분야, 시민단체 등 9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헌법적·민주적 가치 훼손, 인권침해, 군에 대한 신뢰 실추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부조리·불공정 사건들을 중심으로 10대 권고 의제를 선정하여 선정된 의제별로 국방부 소관 부서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운영하였다.

| 군 적폐청산위원회 성과 | 위원회는 약 5개월 동안 11회의 전체회의와 30여 회의 소위원회를 통해 10대 권고 의제와 69건의 세부 과제를 도출하였다.

군 적폐청산위원회 10대 권고 의제

1차 권고 (2017. 12. 14.)	2차 권고 (2018. 1. 11.)	3차 권고 (2018. 2. 8.)	4차 권고 (2018. 2. 22.)
① 군 정치 개입 근절 법제화 ②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및 제도 개선 ③ 좌우 극편향 안보 교육 제도 개선 ④ 병역비리 근절 및 제도 개선	⑤ 군 장병 사적 운용 근절 및 제도 개선	⑥ 기무사 군인·민간인 사찰 근절 및 인권보호 강화 ⑦ 군 인권침해 근절 및 제도 개선 ⑧ 군 내부신고 활성화	⑨ 군 인사적폐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⑩ 군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세부 과제 : 18	세부 과제 : 6	세부 과제 : 29	세부 과제 : 16

2. 군 적폐청산위원회 권고안 세부 내용

| 군 정치 개입 근절 법제화 |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군기무사령부는 지난 2012년 4월 제20대 총선과 그해 12월 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난하는 여론 조작 인터넷 댓글 활동 사건으로 인해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시켰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군의 정치 개입은 이를 지시하는 외부나 상급자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명하복의 군 조직의 특수성에서 비롯됨을 인식하고, 군의 정치 개입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방부는 정치 관여 등을 지시하는 상관과 외부공직자를 처벌하고, 하급자는 내외부의 부당한 정치개입 지시에 대해 거부하고 신고하도록 하여 더 이상 군에 대한 정치 개입이 불가능하도록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군 의문사 진상 규명 | 군 의문사란 군 복무 중 사망한 자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건 또는 사고를 말한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의문사 유가족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다시는 군에서 억울한 죽음이 재발하지 않도록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고, 순직 제도를 개선하여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 조속한 진실 규명을 권고하였다.

국방부는 대통령 소속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3월 13일 공포됨에 따라, 차관 직속으로 위원회 설립준비단을 발족하고 2018년 9월 14일 위원회의 안정적 출범을 지원하였다. 또한, 입대 후 질병의 발병·악화로 사망한 경우도 순직으로 인정하는 등 순직 인정 기준을 완화했으며, 2008년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1]가 조사한 230명의 진상규명자 중에 유가족이 순직 심사를 신청하지 않아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91명을 일괄심사하여 90명을 순직 결정하였다. 그 외에도 군 내 사망사고 발생 시 외부전문가 수사 과정 참여, 보훈신청 업무처리 간소화, 자해사망 순직자 대상 전우사랑위로금 지급 등도 제도를 개선하였다.

| 좌우 극편향 안보교육 개선 | 장병 및 예비군 대상 일부 안보교육에서 특정 정치이념에 편향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 대상자가 교육 내용에 거부감을 갖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안보교육 과정에서 군에 대한 정치적 오해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사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장병 인성교육을 확대하며, 외부 전문 강사 선정 기준과 교육 검증 시스템 개선을 통한 유익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장병 및 예비군 대상 안보교육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1)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2006.1.1.부터 2008.12.31.까지 활동한 한시적 기구임

국방부는 정훈 교육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정치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일절 거론하지 못하도록, 「정훈·문화활동 훈령」에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 밖에도 예비군 안보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외부 강사 초빙 교육에 대한 검증 관리와 교육 피드백 강화 차원에서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으며, 교육 콘텐츠 다양화를 위해 장병 선호도와 최신 경향이 반영된 '강군비타민', 'TV특강 지식in' 등의 강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 병역비리 근절 | 그동안 일부 고위 공직자나 그 자녀,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등의 병역면탈 소식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일반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2000년 이후에는 내부 직원이 연루된 병역비리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대기기간 장기화 및 사회복무요원 배치 기관 선정에 있어서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기간 단축을 위해, 지방재정으로 지출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를 국고로 지원하여 지자체의 사회복무요원 소요 확대를 유도하고, 장기대기에 따른 병역의무 면제 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배치 기관 선정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고위 공직자 자녀의 사회복무요원 근무기관 선택 대상에서 국가 기관을 제외하고, 본인 선택은 사회복지시설, 지하철 공단 등 비선호 기관을 우선 선택하도록 권고하였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을 개정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장기대기에 따른 전시근로역 처분 대기기간을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지자체가 부담하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중식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건비 전체를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기관을 선택할 때 선호 기관을 제외하는 방안을 수립·실시할 계획이다.

| 군 장병 사적 운용 근절 | 4성 장군이 공관병에게 사적인 업무나 부당한 지시, 폭언 등을 일삼은 '공관병 갑질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적 공분을 초래하였다. 국방부는 공관병 제도를 폐지하였으나 문제가 되는 4성 장군은 제도상 징계가 불가하고, 비전투 분야인 복지회관에 관리병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므로 4성 장군은 선임 장교 부족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리고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정한 공관 규모 기준을 마련하여 병사들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국방부는 징계 및 항고위원회 인원 구성이 제한되는 경우 부족한 위원은 장관이 지정하는 4성 장군으로 위촉하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하고, 편제 대비 초과 운영 중인 복지회관 관리병은 보직 전환하였으며, 앞으로 복지회관 관리병도 민간인력으로 대체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장병 사적 운용 근절을 위한 각 군 복무 규정 개정, 직권남용 사례집을 제작 배포 및 교육하였으며, 올해 지휘관 공관의 적정 면적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 기무사 군인·민간인 사찰 근절 및 인권보호 강화 | 국군기무사령부는 본연의 업무인 보안, 방첩 및 부정비리 예방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위법 소지가 있는 활동을 금지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시행해 왔다. 그러나 기무사는 장병들의 일과 후 개인 생활이나 가정사를 관찰하는 등 직무 범위를 벗어난 활동으로 군인 및 민간인 사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인권 및 지휘권을 침해하는 활동을 전면 폐지하고 신원진술서 기재 항목이었던 보유 재산, 친교 인물 등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조사 업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민간인 사찰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인권보호센터(위원회)에 민간자원을 확대하고 장병 대상 인권교육을 보다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방부는 「신원조사 업무지침」과 「부대원행동강령」을 개정하여 보안, 방첩, 부정비리 예방과 무관한 활동과 인권 및 지휘권을 침해하는 사찰을 전면 폐지하였다. 또한, 신원조사 업무 절차를 개선하고 인권보호센터에 민간자원을 확대하는 등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 군 인권침해 근절 | 우리 군은 장병 인권보호를 위한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어폭력,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고가 발생하여 군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신이 이어져 왔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군 내부에 인권의식을 고취시키고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군 인권 보호 컨트롤 타워 정립', '인권 평가지수 개발 및 평가체계 개선', '인권 침해 피해자 지원 보호 강화', '군 외출·외박 구역 제한과 같은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권고하였다.

국방부는 인권 업무를 연계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인권 평가지수를 개발하여 2019년 10개 사단급 부대를 선정하여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군 인권 자문변호사 도입, 인권 피해자 보호 강화, 가해자를 상대로 한 구상청구권 활성화 유도, 사관학교 생도 이성 교제 보고 의무화 폐지 등 군 내 인권 침해적인 요소를 개선하고 있다. 또한, 군 복무 중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 및 질병을 입은 전역자 및 그 가족과 고통을 분담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금전적 보상 이외에 국가적 차원의 안정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게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있다. 군인 외출·외박 구역은 장병 기본권 보장, 지역 상생 발전, 군사대비태세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하게 검토·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군 내부 신고 활성화 | 내부 신고는 비리나 부패를 근절하고 자정 기회로 삼을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자 색출, 인적사항 유출, 인사상 불이익 등으로 인해 공익신고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원회는 내부 신고자가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내부 고발로 인한 불이익·피해 구제 조치, 법·제도 마련 및 교육을 의무화하고, 군 부패·비리 사건 조사 및 처리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방부는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국방부 소관 법률을 포함해 국방 관련 공익신고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였다. 그리고 신고자 보호조치를 미흡하게 조치한 책임자의 징계를 강화하는 등 군 내부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군 부패 비리 사건 조사에 외부민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군 인사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 군 인사는 지역 연고, 동문 등 사적 요소에 영향을 받아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어 왔다. 특히 우수한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해 도입한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는 분야별 전문가 식별 및 관리에 허점이 있고 기존 임기제 진급 제도와 중복되는 등의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가 당초의 목적과 다르게 악용될 소지가 있어 장군 진급 심사에서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를 폐지하고 장군 진급 제청심의위원회에 각 군 참모총장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방부는 장군 진급 시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를 폐지하고, 정성 인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각 군 참모총장을 제청심사위원회에서 제외하는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군 성폭력 근절 | 그동안 성폭력 근절을 위해 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군 인권 중 성폭력 분야를 독립 의제로 분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군 성폭력 방지 정책 관리 감독기구 설립, 최근 10년간 장성급 장교의 군 내 성폭력 사건 처리 결과 재조사, 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직 환경 구축, 피해자 지원 및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국방부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독립기구 신설을 포함하여 성폭력 근절 정책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성폭력 예방 활동 강화 등 정책, 조직 환경, 피해자 지원 분야에서 총 12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3. 체계적인 권고 과제 이행

국방부는 약 5개월간의 군 적폐청산위원회 활동을 통해 과거 군 내 불합리한 부조리와 관행으로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발생하였음을 성찰하였고, 우리 군이 '가고 싶은 군대', '보내고 싶은 군대'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앞으로 위원회 권고 과제(총 69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폐청산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특별부록 2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경과 및 평가

1. 핵 개발 경과 및 평가

| 핵 기반시설 구축 | 북한은 6·25 전쟁이 끝난 직후 전후 복구와 동시에 원자력에 관한 기초연구, 인력양성 등 핵에너지 활용을 위한 기반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1955년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에 핵물리강좌를 개설하였고 1956년에는 국가과학원(구 과학원)에 핵물리실험실을 설치하였다. 특히 1956년 「북·소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면서 구소련 드브나 핵연구소에 과학자들을 파견하여 선진기술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1959년에는 중국과도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1963년 구소련의 도움을 받아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하였고, 이를 토대로 1965년부터 평북 영변에 대규모 핵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평산, 순천, 박천 등의 우라늄 광산 개발과 채광된 우라늄을 정련하기 위한 시설 등도 건설하였다. 이처럼 북한은 풍부한 우라늄 자원을 바탕으로 핵시설들을 차례대로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 핵 개발 본격화 | 북한은 1980년대 들어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 구비, 우수한 핵 전문인력 양성, 핵실험장 건설 등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장하면서 본격적인 핵 개발에 착수하였다. 영변에 조성된 핵단지에 플루토늄 생산에 필요한 핵심시설인 원자로, 재처리시설, 핵연료제조공장 등이 차례대로 완공되었다. 북한은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5MWe 흑연감속용 원자로를 1986년 완공하여 가동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방사화학실험실을 1990년 완공하였다. 이와 동시에 영변 단지 내 50MWe 흑연감속용 원자로가 1995년 완공을 목표로 착공되었고, 태천에는 200MWe 흑연감속용 원자로 건설 계획을 수립하였다.

영변에 위치한 5MWe 원자로

1989년 프랑스 상업 위성에 의해 영변 핵단지가 노출되면서 북한의 비밀 핵 개발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후 국제 사회의 압력에 의해 1991년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 간 안전조치협정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1992년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결과 북한의 핵활동 신고 내역에 중대한 불일치가 발견되면서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은 더욱 논란이 되었다. 추가 확인을 요구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 요청은 북한의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이어졌고 클린턴

행정부는 군사 옵션까지 검토하였으나 1994년 북미 간 「제네바 기본합의」[2] 타결로 북핵 문제가 극적으로 봉합[3]됨으로써 북한의 핵활동은 이후 2002년까지 한동안 동결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제네바 기본합의」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에 파키스탄의 지원을 받아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우라늄 농축 추진에 대해 북한은 한동안 존재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2010년 미국의 헤커 박사를 초청하여 우라늄 농축시설을 대외에 전격 공개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우려를 가중시켰다.

2002년 부시 행정부는 「제네바 기본합의」의 불완전성과 북한의 우라늄 농축활동 의혹을 제기하며 「제네바 기본합의」 파기를 선언하였고 북한에 대한 중유 지원과 경수로 건설 중단을 선언하였다. 이에 북한도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 추방, 영변 핵시설의 동결 해제, 사용후핵연료봉의 재처리 조치를 취함으로써 핵물질 생산을 전격적으로 재개하였다. 이후 북한은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친 재처리를 통해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하였으며,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 선언에 이어 2006년 10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최초의 지하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당시 우리나라 기상청에 의해 탐지된 인공지진파의 강도는 약 3.9mb로 측정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평가된 핵폭발 위력은 1kt 미만이었다. 이러한 핵실험 결과에 기초하여 분석된 북한의 핵기술 수준은 실전에 운용하기에는 미흡하였으나 최소한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고 폭발시킬 수 있는 단계에는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핵능력 고도화 | 북한은 1차 핵실험 이후 핵탄두의 위력 증대, 미사일 탑재, 대량생산 등에 초점을 맞추고 핵능력 고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북한은 6자회담이 진행되던 2008년 말까지 영변 핵단지 내 주요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를 단행하며 핵물질 생산을 잠정 중단하였다. 그러나 검증 문제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6자회담이 더 이상 개최되지 못하면서 2009년에 북한은 불능화가 진행 중인 핵시설을 재가동하였고, 같은 해 5월에는 2차 핵실험까지 감행하였다. 2차 핵실험에서 보여준 핵폭발 위력은 1차 핵실험보다 한층 증가한 약 3~4kt의 위력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과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무기의 위력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실전에 사용하기에는 여전히 기술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북한 핵실험 현황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일 시	2006. 10. 9. (월) 10:36	2009. 5. 25. (월) 09:54	2013. 2. 12. (화) 11:57	2016. 1. 6. (수) 10:30	2016. 9. 9. (금) 09:30	2017. 9. 3. (일) 12:29
규모(mb)	3.9	4.5	4.9	4.8	5.0	5.7
위력(kt)	약 0.8	약 3~4	약 6~7	약 6	약 10	약 50

2)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 간 3차례 고위급회담을 통해 합의문을 채택(1994. 10. 21.)

3) 북한의 핵개발 동결·포기를 대가로 미국은 중유 제공, 경수로 2기 건설, 북미 관계 정상화 등에 합의

2012년 이후 북한은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내세우면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결과 2013년 2월, 2016년 1월과 9월, 2017년 9월 등 4차례의 추가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특히 6차 핵실험에서 보여준 핵폭발 위력은 약 50kt으로 이는 과거 핵실험에 비해 현저히 증대되어 수소탄 시험을 시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수차례 핵실험 직후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면서 핵탄두의 표준화·규격화·소형화·경량화·다종화[4] 달성을 주장하였고 핵탄두와 미사일의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 의사 등을 표명하였다.

2. 미사일 개발 경과 및 평가

북한은 핵·고폭탄·화생무기 장거리 투발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1960년대 중반부터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여 왔다. 1976년 이집트로부터 스커드-B를 도입하여 역설계를 통해 스커드 미사일의 자체 생산에 성공하였고, 이를 개량하여 1988년에 작전배치를 완료하였다. 1990년대에는 사거리 1,300km인 노동미사일을 개발하여 작전배치를 완료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1998년에는 대포동 1호를, 2006년과 2009년, 2012년, 2016년에는 대포동 2호를 위성 발사 명분하에 발사하였다. 또한 구소련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술을 도입하여 사거리 3,000km 이상의 중거리 미사일인 무수단을 시험발사 없이 2007년에 작전배치하였고,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하였다.

2016년에는 신형 고출력 미사일 엔진인 백두산 엔진 개발에 성공하여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개발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2017년 5월과 8월, 9월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급으로 평가되는 화성-12형을 시험발사하였고, 2017년 7월과 11월에 대륙간탄도미사일급으로 평가되는 화성-14형과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하였다.

또한 2016년 8월에는 구소련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하여 신포급 잠수함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북극성)을 시험발사하였으며, 2017년 이를 지상형으로 개조한 북극성-2형을 2차례 시험발사하였다.

4) 표준화 : 여러 종류의 미사일에 탑재될 수 있도록 핵탄두를 표준화하는 것을 의미
규격화 : 대량생산이 가능토록 핵탄두와 그 부품을 규격화하는 것을 의미
소형화·경량화 : 미사일 탑재를 위하여 핵탄두의 크기와 무게를 줄이는 것을 의미
다종화 : 해당 군사적 목적 달성을 위해 여러 가지 종류의 핵무기를 만드는 것으로 핵반응 방식에 따라 원자·수소·중성자탄, 파괴력·사거리에 따라 전략·전술·전역 핵무기 등으로 구분 가능

북한 미사일 개발 경과(2017. 1. 1. 이후)

일 자	주요 내용
2017. 2. 12.	평북 구성에서 북극성-2형 미사일 발사
2017. 3. 6.	평북 동창리에서 SCUD-ER 미사일 발사
2017. 3. 22.	강원 원산에서 무수단 미사일 발사(실패)
2017. 4. 5.	함남 신포에서 화성-12형 미사일 발사(실패)
2017. 4. 16.	함남 신포에서 화성-12형 미사일 발사(실패)
2017. 4. 29.	평남 북창비행장에서 화성-12형 미사일 발사(실패)
2017. 5. 14.	평북 구성에서 화성-12형 미사일 발사
2017. 5. 21.	평남 북창에서 북극성-2형 미사일 발사
2017. 5. 29.	강원 원산에서 SCUD 계열 미사일 발사
2017. 7. 4.	평북 방현에서 화성-14형 미사일 발사
2017. 7. 28.	자강 무평에서 화성-14형 미사일 발사
2017. 8. 26.	강원 깃대령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17. 8. 29.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화성-12형 미사일 발사
2017. 9. 15.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화성-12형 미사일 발사
2017. 11. 29.	평남 평성에서 화성-15형 미사일 발사

북한 미사일 종류 및 제원

구 분	SCUD-B/C	SCUD-ER	노 동	무수단	대포동 2호	북극성/북극성-2형	화성-12형	화성-14형	화성-15형
사거리 (km)	300~500	약 1,000	1,300	3,000 이상	10,000 이상	약 1,300	5,000	10,000 이상	10,000 이상
탄두 중량 (kg)	1,000	500	700	650	500~1,000	650	650	미상	1,000
비 고	작전배치	작전배치	작전배치	작전배치	발사	시험발사	시험발사	시험발사	시험발사

특별부록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지원

1. 대회 소개

제23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이하 '대회')가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3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강원도 평창과 강릉, 정선 등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로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이어 세계 4대 스포츠 제전을 모두 개최한 다섯 번째 국가가 되었다.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92개국 2,920명(패럴림픽은 49개국 590명)의 선수가 참가하였고, 우리나라는 올림픽 7위(금 5, 은 8, 동 4), 패럴림픽 16위(금 1, 동 2)의 성적을 거두었다. 국방부는 인적·물적자원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이 경제·문화·평화·ICT·환경 올림픽이 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평창의 'ㅍ'과 'ㅊ'을 형상화한 로고

마스코트 수호랑과 반다비

2. 국방부 지원 준비

국방부의 지원 목표는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경비작전과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여 안전하고 평화적인 올림픽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특히, 전문성과 책임감이 요구되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계, 대테러, 폭설 시 대비책, 운전, 통역, 의료, 의장대 등 전문인력 분야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대회 준비를 위한 테스트 이벤트[5](2016. 11. 25. ~ 2017. 4. 8.) 기간 중 1,053명의 인력을 지원하

5)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 사전점검과 '붐' 조성의 일환으로 열린 대회로, 총 28번의 국제대회를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와 같은 경기장에서 개최

여 준비상태 점검에 참여하였다.

테스트 이벤트 시 군 지원 현황

구 분	계	시상/경기운영	대회 보조	알파인스키 경험자	군악대	의료서비스
지원 인원(명)	1,053	687	163	4	180	19

또한 대회 지원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2016년 2월 22일부터 비상설기구로 운용되던 국방부 지원위원회를 2017년 7월 1일부로 상설기구로 전환하고, 실무추진기구로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TF를 구성하였다. 2017년 10월 16일에는 지원TF를 국방부 실무추진단으로 확대 구성하였다.

국방부 지원위원회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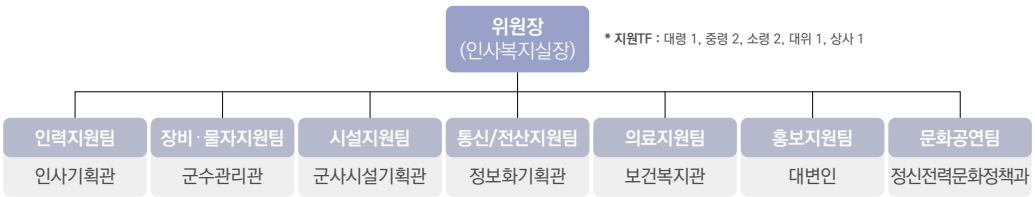

3. 국방부 지원사항

| 업무협약 체결 | 우리 국방부장관은 2017년 12월 27일 강원도청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희범 대회조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해 군의 인력, 장비, 물자 등을 지원하고 올림픽 홍보·붐업 행사에도 참여하기로 하였다.

| 성화봉송 지원 |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주요 이벤트로 성화봉송을 지원하였다. 국무총리 주관 성화 입국 행사 시 전통악대(취타대) 지원을 시작으로 세계 최초 군함 봉송(구축함 문무대왕함), 신안군도 1,004개 섬의 수리온 헬기 봉송,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 최북단 대성동 자유의 마을[6] 특별 봉송, 비무장지대(DMZ) 일대 자전거 봉송, 임진

자유의 마을 성화봉송

6) 비무장지대의 유일한 남측 마을로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인근에 1953년 7월부터 조성되어 약 50세대가 거주 중

클래식 행사[7] 등을 지원함으로써 동계올림픽 '붐' 조성에 기여하였다. 특히 군함 봉송은 주요 일간지 및 방송에 소개되어 군의 적극적인 올림픽 지원 노력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최북단 대성동 자유의 마을에서 출발한 성화는 비무장지대(DMZ)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자전거 봉송으로 이어졌다.

성화봉송 지원 사항

구 분	해상, 군함 봉송	신안군도 헬기 봉송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	최북단 자전거 봉송	임진 클래식 지원
내 용	구축함 1척, 고속정 2정, 헬기 2대, 주자 2명	헬기 3대, 주자 1명	T-50항공기 8대, 주자 1명	환영 인력 1,150명, 컨보이 및 군악대, 주자 5명	24인용 천막 20동, 전시품 등

| 인력지원 | 대회 운영 및 경기 진행을 위해 운전 및 도핑시료 운반, 종합운영센터 및 경기장 통제소 운영, 의장 및 통역지원, 경기지원, 의료, 개·폐회식 공연 참가, 교통관리, 대회 안전 관리 및 시설 자산 보호, 제설지원, 보안요원 및 안전통제, 주요 인사 경호 안전, 경비작전 및 대테러 임무 등 전 분야에 걸쳐 총 14,199명(연 인원 425,652명)의 인력을 지원하였다.

군 인력지원 현황

구 분	총 계	경기지원									경비 지원
		계	운 전	통 신	의 장	통 역	경기 지원	의 료	개·폐 회식	제 설	자산 보호	
올림픽(명)	9,003	5,260	519	205	153	165	2,668	76	254	420	800	3,743
패럴림픽(명)	5,196	2,732	446	34	142	118	998	41	12	406	535	2,464

특히, 경기지원 분야는 혹한의 날씨 속에 장시간 야외 활동이 요구되는 경기장 코스조정·정비와 주요 구역 통제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운전 분야는 대회 선수단 및 국제올림픽위원회(IOC)[8]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9]의 주요 인사 수송, 도핑시료 운반 등 전문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업무를 지원하였다. 의장대는 선수촌 입촌식 국기게양 등 의장행사 임무를 지원하여 대회의 품격을 높였다. 대테러 임무 및 경비작전에 대테러특공대와 화생방테러특임대, 폭발물처리반, 신속대응팀 등 군의 최정예 특수요원을 투입하여 대회 기간 동안 경기장 및 시설 가까운 곳에서 24시간 빈틈없는 경계 근무를 수행함으로

7) 6·25 전쟁 당시 캐나다 군인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고향의 향수를 달래기 위해 임진강 근처에서 개최한 아이스하키 경기를 재현하는 행사

8) 1894년에 설립되었으며 2018년 현재 206개국이 회원국이다. (IOC :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9)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2018년 현재 174개국이 회원국이다. (IPC : 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대회지원

의장대지원

써 안전하고 평화로운 올림픽에 크게 기여하였다.

| 보안지원 | 대회 시작 5일 전 민간보안요원 중 노로바이러스 감염자 발생으로 전체 약 1,200명이 격리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조직위원회의 요청으로 군 인력을 단시간에 긴급 배치하여 경기장 등의 시설보안과 검문·검색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군이 평시부터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조직인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언론은 물론 국제올림픽위원회 관계자들까지 국방부의 신속한 대응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대회의 성공적 진행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군의 지원활동을 높이 평가하였다.

대테러 임무 및 경비작전

| 제설지원 | 동계올림픽 종료 후 패럴림픽 시작 전까지 대관령 지역에 폭설이 내려 정상적인 개회식 진행이 어려웠다. 이 상황에서 군 장병 1,500여 명이 새벽 5시부터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제설작업으로 올림픽 스타디움 및 주변 도로를 말끔하게 정리함으로써 개회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대회 민간 보안요원 대체임무

| 장비 및 물자지원 |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와 긴급 후송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팀을 포함한 의무후송헬기 1대 등 의료장비·물자 28종 294점과 강원도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제설 장비 5종 55대 등 연 912대의 장비를 지원하였다.

의무후송헬기

장비·물자 지원 현황

구 분	의료 장비·물자(28종 294점)	제설 장비(5종 55대)	군(軍) 비행장
올림픽 / 패럴림픽	응급후송헬기 1대, 이동용 치과 및 진료차량, X-Ray, 초음파검사기 등	다기능제설기 14대, 일반제설기 24대, 로더 3대, 굴착기 6대, 덤프트럭 8대 등	강릉, 원주 비행장 (방송사 촬영헬기)

| 기타 | 조립형 숙소 191동(79.2억)을 지원하여 대회지원 인력들의 숙소 부족 문제를 해소하였고, 1,868회(민간 매체 35회, 온라인 59회, 국방 매체 1,774회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하였다. 또한 국군체육부대에 동계종목(8개 종목, 49명)을 한시적으로 편성하고 아이스하키, 루지, 바이애슬론 등 3개 종목에 9명의 국가대표가 출전하여 우리나라의 종합 7위 달성에 기여하였다.

| 총평 | "군이 없으면 올림픽 성공은 불가능하였다."라는 표현으로 조직위원회와 언론은 국방부의 지원을 극찬하였다. 14,199명의 인원과 33종 349대의 장비, 군 비행장, 조립형 숙소 191동 등 약 1,153억 원 이상의 인적·물적 지원을 통해 평화·안전 올림픽과 경제 올림픽에 기여하였다. 특색 있는 성화봉송과 1,868회의 언론홍보로 올림픽 '붐'을 조성하였으며, 타 국가·비인기 종목의 티켓 구매와 약 11,000명에 달하는 장병 및 군 가족 관중지원, 체육부대 참가 등으로 동계올림픽 성공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국민과 함께하는 친군 이미지 구축에도 성공하였다.

특별부록 4

독일 6·25 전쟁 의료지원국 포함

1. 개요

국방부는 6·25 전쟁 당시 독일(당시 서독) 의료지원단의 파견 과정과 성과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6월에 독일을 6·25 전쟁 의료지원국으로 포함하기로 하였다.

6·25 전쟁 의료지원국(5개국 → 6개국)

참전국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인 도	독 일
연인원	623	630	1,124	128	627	117(의사)
참전 형태	이동외과병원	병원선	적십자병원	적십자병원	야전병원	적십자병원

2. 검토 배경

정부 차원에서는 이전부터 독일의 의료지원 활동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예우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독일 방문 당시 독일 6·25 전쟁 의료지원단 단원을 만나 대통령 표창을 친수하고, 독일의 6·25 전쟁 의료지원활동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국가보훈처는 2017년 11월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에 독일 의료지원단 단원과 그 가족 및 후손을 우리나라에 초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독일은 6·25 전쟁 의료지원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독일은 1954년 5월부터 1959년 3월까지 부산에서 의료지원활동을 펼쳤으나, 의료지원활동이 1953년 7월 정전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그동안 6·25 전쟁 물자 및 재정지원국으로만 분류되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 독일 방문 당시 독일 6·25 전쟁 의료지원단 단원 접견(2017년 7월)

"턴 투워드 부산"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 당시 독일 의료지원단 단원 및 가족 방한(2017년 11월)

3. 독일의 6·25 전쟁 의료지원활동

독일은 6·25 전쟁 중이었던 1953년 5월, 참전 유엔군을 지원하기 위해 야전병원 파견 의사를 유엔본부에 전달하였다. 이후, 1954년 5월부터 1959년 3월까지 연인원 117명에 이르는 독일 의사를 포함하여 간호사, 기술자 등으로 구성된 의료지원단을 우리나라에 파견하였다.

독일 6·25 전쟁 의료지원단은 부산 서독적십자병원의 이름으로 30만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6천여 명의 출산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또한, 독일 의료지원단은 41명의 한국 의사에게 진료, 수술 등 임상 수련을 실시하게 하고, 60명의 간호사를 양성하는 등 의료진 양성사업을 펼쳤다.

부산 서독적십자병원에서 실시한 진료 및 출산지원활동 통계[10)]

단위 : 명

		계	1954년	1955년	1956년	1957년	1958년
입원환자		21,562	2,305	4,480	4,750	4,857	5,170
외래환자		277,250	32,410	65,550	47,904	67,159	64,227
수 술	외 과	6,155	605	1,541	1,217	1,341	1,451
	산부인과	3,529	297	665	742	877	948
	소아과	6,551	643	1,287	1,098	1,337	2,186
출 산		6,025	239	1,055	1,298	1,503	1,930

4. 추진 경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2018년 2월부터 독일의 6·25 전쟁 의료지원활동과 관련된 사료의 발굴과 연구를 통해 독일 의료지원단의 파견 과정과 성과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2018년 5월 10일 '독일 6·25 전쟁 의료지원활동 재조명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학계 의견을 수렴하였다.

독일 6·25 전쟁 의료지원활동 재조명 학술회의(2018년 5월)

국방부는 독일의 6·25 전쟁 의료지원활동이 정전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지원 의사 전달은 전쟁 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서독적십자병원이 유엔군 산하 의료기관으로서 구호 사업이 아니라 유엔군 지원을 목표로 했으며, 서독적십자병원이 유엔군 산하 의료기관으로서 활동했고, 기존 물자 및 재정지원국 분류 기준도 정전 이후의 활동을 포함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일을 의료지원국으로 포함하기로 하였다.

10) Deutsches Rotes Kreuz : DAS DRK Korea Hospital(독일적십자사), 1954. 4., pp. 6-7, 조성훈, 「6.25 전쟁 시 독일 의료지원단 파견 과정과 성과」에서 재인용

5. 후속조치

국방부는 향후 6·25 전쟁 참전국 대상 보훈 행사 등에서 기존 5개 의료지원국과 함께 독일을 6·25 전쟁 의료지원국으로 예우하고, 군사사 등 관련 기록물, 현충시설 및 기념관 전시물에도 독일이 6·25 전쟁 의료지원국에 포함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2018년 6월 25일 6·25 전쟁 제68주년 행사와 2018년 7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 행사에서 독일을 의료지원국으로 예우하였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독일 의료지원단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역사의 일부로서 기억할 것이다.

6·25 전쟁 제68주년 행사 당시 독일 국기 게양(2018년 6월)

유엔군 참전의 날 행사 당시 독일 국기 포함(2018년 7월)

주변국 군사력 현황

병력

단위 : 명

구 분	미 국	러시아	중 국	일 본
총 병력	**1,348,400**	**900,000**	**2,035,000**	**247,150**
육 군	476,250	280,000	975,000	150,850
해 군	323,950	150,000	240,000	45,350
공 군	322,800	165,000	395,000	46,950
기 타	해병대 184,400 해안경비 41,000	공수 45,000 전략 50,000 지휘/지원 180,000 철도군 29,000 특수군 1,000	로켓군 100,000 전략지원군 175,000 기타 150,000	통막 4,000

육군

구 분	미 국	러시아	중 국	일 본
사 단	10(여단 49)	8(여단 89)	집단군 13	9(여단 5)
전차(대)	5,884	12,980	6,740	690
보병전투차량(대)	4,834	13,640	3,800	68
정찰차(대)	2,545	2,700	650(경전차)	111
장갑차(대)	18,746	12,100	5,020	795
견인포(문)	1,339	12,565	6,140	398
자주포(문)	947	5,856	2,320	172
다련장포(문)	600	4,082	1,872	99
박격포(문)	2,507	4,130	2,586	1,105
대전차 유도무기(기)	SP 1,133	GUN 2,526	SP 924	SP 37
지대공미사일(기)	1,183	1,520	344	327
헬기(대)	3,740	-	973	420
항공기(대)	187	-	9	7

해군

구 분		미 국	러시아	중 국	일 본
전술잠수함(척)		54	49	58	19
전략핵잠수함(척)		14	13	4	–
항공모함(척)		11	1	1	–
순양함(척)		23	5	–	–
구축함(척)		64	15	23	38
호위함(척)		9	13	59	9
초계함·연안전투함정(척)		57	100	206	6
소해함(척)		11	43	42	26
상륙함(척)		31	19	53	3
상륙정(척)		245	28	87	8
지원함(척)		14	265	186	21
전투기(대)		736	156	283	–
헬기(대)		670	193	113	130
해병전력	해병사단(개)	3	여단 3	여단 3	–
	전차(대)	447	250	73	–
	보병전투차량(대)	502	1,000	60	–
	상륙돌격장갑차(대)	1,200	–	152	–
	병력수송장갑차(대)	207	400	–	–
	야포(문)	1,501	365	40	–
	대전차미사일(기)	106	–	–	–
	UAV·ISR(대)	100	–	–	–
	항공기(대)	455	–	–	–
	헬기(대)	437	–	–	–

공군

구 분	미 국	러시아	중 국	일 본
전략폭격기(대)	157	139	–	–
폭격기(대)	–	–	162	–
정찰기(대)	ISR·UAV·CISR 487	87	66	17
지휘기(대)	4	10	5	–
전투기(대)	FTR·FGA·ATK 2,014	865	1,625	332
수송기(대)	631	428	333	57
급유기(대)	301	15	13	6
조기경보기(대)	AWE&C 31	18	10	17
훈련기(대)	1,129	213	974	246
헬기(대)	171	806	53	51
민간예비(대)	517	–	–	–
전자전기(대)	EW 14	3	13	3

* 출처 : 「The Military Balance 2018」(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18년 2월)
* 일본 구축함에는 휴가급 2척, 이즈모급 2척, 아타고급 2척 포함

일반부록 2

세계 주요 국가의 국방비 현황

2017년 기준

국 가	GDP (억 달러)	국방비 (억 달러)	GDP 대비 국방비(%)	병 력 (천 명)	국민 1인당 국방비(달러)
대한민국	15,300	356	2.33	625	697
미 국	194,000	6,028	3.11	1,348	1,845
일 본	48,800	460	0.94	247	364
중 국	119,000	1,505	1.26	2,035	108
러시아	14,700	456	3.10	900	321
대 만	5,710	104	1.82	215	444
영 국	25,700	507	1.98	150	783
프랑스	25,700	486	1.89	203	725
독 일	36,500	417	1.14	179	518
이스라엘	3,480	185	5.33	177	2,235
이집트	1,963	27	1.36	439	28
사우디아라비아	6,790	767	11.30	227	2,684
호 주	13,900	250	1.80	58	1,075
터 키	8,410	80	0.95	355	99
말레이시아	3,100	35	1.12	109	111
태 국	4,380	62	1.41	361	90
싱가포르	3,060	102	3.34	73	1,736
캐나다	16,400	170	1.04	63	478

* 출처 : 「The Military Balance 2018」(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18년 2월)
* 병력, 국방비, GDP 등은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2017년 11월 수집 자료 기준

일반부록 3

연도별 국방비 현황

연 도	국방비(억 원)	GDP 대비 국방비(%)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국방비 증가율(%)
1980	2조 2,465	5.69	34.7	46.2
1981	2조 6,979	5.47	33.6	20.1
1982	3조 1,207	5.49	33.5	15.7
1983	3조 2,741	4.85	31.4	4.9
1984	3조 3,061	4.25	29.6	1.0
1985	3조 6,892	4.23	29.4	11.6
1986	4조 1,580	4.08	30.1	12.7
1987	4조 7,454	3.95	29.6	14.1
1988	5조 5,202	3.83	30.0	16.3
1989	6조 0,148	3.68	27.3	9.0
1990	6조 6,378	3.36	24.2	10.4
1991	7조 4,764	3.13	23.8	12.6
1992	8조 4,100	3.08	25.1	12.5
1993	9조 2,154	2.97	24.2	9.6
1994	10조 0,753	2.75	23.3	9.3
1995	11조 0,744	2.58	21.3	9.9
1996	12조 2,434	2.54	20.8	10.6
1997	13조 7,865	2.60	20.7	12.6
1998	13조 8,000	2.63	18.3	0.1
1999	13조 7,490	2.38	16.4	△0.4
2000	14조 4,774	2.28	16.3	5.3
2001	15조 3,884	2.24	15.5	6.3
2002	16조 3,640	2.15	14.9	6.3
2003	17조 5,148	2.16	14.8	7.0
2004	18조 9,412	2.16	15.8	8.1
2005	21조 1,026	2.29	15.6	11.4
2006	22조 5,129	2.33	15.3	6.7
2007	24조 4,972	2.35	15.7	8.8
2008	26조 6,490	2.41	14.8	8.8
2009	28조 9,803	2.52	14.2	8.7
2010	29조 5,627	2.34	14.7	2.0
2011	31조 4,031	2.36	15.0	6.2
2012	32조 9,576	2.39	14.8	5.0
2013	34조 4,970	2.41	14.3	4.7
2014	35조 7,056	2.40	14.4	3.5
2015	37조 5,550	2.40	14.3	5.2
2016	38조 8,421	2.37	13.9	3.4
2017	40조 3,347	2.33	14.2	3.8
2018	43조 1,581	2.38	14.3	7.0

* GDP : 한국은행의 국민 계정 2010년 기준으로 재계산, 추경예산 기준
* 2016년은 기획재정부 명목 GDP 잠정치, 2017년 및 2018년은 기획재정부 명목 GDP 예상치 기준
※ 명목 GDP : GDP를 구하는 해의 생산물에 당해연도 가격을 적용

일반부록 4

남북 군사력 현황

2018년 12월 기준

구 분				한 국	북 한
병력(평시)	육 군			46.4만여 명	110만여 명
	해 군			7.0만여 명(해병대 2.9만여 명 포함)	6만여 명
	공 군			6.5만여 명	11만여 명
	전략군			-	1만여 명
	계			**59.9만여 명**	**128만여 명**
주요 전력	육군	부 대	군단(급)	13(해병대 포함)	17
			사 단	40(해병대 포함)	81
			여단(독립여단)	31(해병대 포함)	131
		장비	전 차	2,300여 대(해병대 포함)	4,300여 대
			장갑차	2,800여 대(해병대 포함)	2,500여 대
			야 포	5,800여 문(해병대 포함)	8,600여 문
			다련장/방사포	200여 문	5,500여 문
			지대지유도무기	발사대 60여 기	발사대 100여 기(전략군)
	해군	수상함정	전투함정	100여 척	430여 척
			상륙함정	10여 척	250여 척
			기뢰전함정(소해정)	10여 척	20여 척
			지원함정	20여 척	40여 척
		잠수함정		10여 척	70여 척
	공군	전투임무기		410여 대	810여 대
		정찰·감시통제기		70여 대(해군 항공기 포함)	30여 대
		공중기동기(AN-2 포함)		50여 대	340여 대
		훈련기		180여 대	170여 대
	헬기(육·해·공군)			680여 대	290여 대
예비병력				310만여 명 (사관 후보생, 전시근로 소집, 전환/대체 복무 인원 등 포함)	762만여 명 (교도대, 노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등 포함)

* 남북 군사력 비교를 위해 육군 부대·장비 항목에 해병대 부대·장비도 포함하여 산출
* 북한군 야포문 수는 보병 연대급 화포인 76.2mm를 제외하고 산출
* 남북 군사력 현황은 양적 비교만 제시하였음. 군사력을 실질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양적 비교뿐만 아니라 장비성능 및 노후도, 훈련수준, 합동전력 운용개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성적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육군 여단 비교의 경우 2016년 국방백서에서는 남북 기동여단만 비교하였으나, 2018년 국방백서에서는 군단급 이상 제대에 편성된 독립여단인 포병, 공병, 항공여단 등을 포함하여 비교한 것임

일반부록 5

남북 경제지표 현황

구 분	한 국		북 한		한국/북한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명목 GNI(조 원)	1,646.2	1,730.5	36.4	36.6	45.3배	47.2배
1인당 GNI(만 원)	3,212.4	3,363.6	146.1	146.4	22배	23배
경제성장률(%)	2.9	3.1	3.9	-3.5	-	-
무역총액(억 달러)	9,016.2	10,521.7	65.3	55.5	138.1배	189.6배
총인구(천 명)	51,246	51,446	24,897	25,014	2.1배	2.1배

* 출처 : 한국은행
* GNI(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 1993년부터 유엔(UN),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에서 GNP 대신 사용 (GNI≒GNP)

일반부록 6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현황

구 분	배 경	주요 내용(요약)
1695호 (2006. 7. 15.)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06. 7. 5.)	• 대량살상무기(WMD)·미사일 활동 관련 물자, 기술, 금융자원 이전을 방지하고 감시할 것을 요구
1718호 (2006. 10. 14.)	1차 핵실험 (2006. 10. 9.)	• 금수조치, 화물검색 도입, 제재대상 자산동결 및 여행통제 •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산하에 북한제재위원회 설치
1874호 (2009. 6. 12.)	2차 핵실험 (2009. 5. 25.)	• 소형무기 수입을 제외한 전면 무기 금수 • 대량살상무기(WMD)·미사일 활동에 기여 가능한 금융거래 금지 • 북한제재위원회 지원을 위한 전문가 패널 설치
2087호 (2013. 1. 22.)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2. 12. 12.)	• 공해상 의심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 마련 추진 • 'catch-all' 성격의 대북 수출통제 강화 • 북한 금융기관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촉구
2094호 (2013. 3. 7.)	3차 핵실험 (2013. 2. 12.)	• 핵·미사일 관련 금수 품목 확대 • 금융제재 강화(결의 위반 북한 은행의 해외 신규 활동 금지 등)
2270호 (2016. 3. 2.)	4차 핵실험(2016. 1. 6)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6. 2. 7.)	• 북한과의 군·경 협력 금지 • 북한 행·발 화물 검색 의무화, 제재 대상 선박 또는 불법 활동연루 의심 선박 입항 금지 • 북한 은행의 해외 지점·사무소의 90일 내 폐쇄 • 북한산 광물(석탄, 철, 금 등) 수입 금지 조치 도입
2321호 (2016. 11. 30.)	5차 핵실험 (2016. 9. 9.)	•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 금지 • 북한에 대한 항공기·선박 대여 및 승무원 제공 금지, 북한 행·발 여행용 수하물 검색의무 명시 • 북한 내 외국 금융기관 전면 폐쇄 • 수출금지 광물(은, 동, 아연, 니켈) 추가 및 조형물 수출 금지 • 북한산 석탄 수출 상한제 도입
2356호 (2017. 6. 2.)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17. 5. 14.)	• 제재 대상 지정 확대
2371호 (2017. 8. 5.)	탄도미사일 발사 (2017. 7. 4., 7. 28.)	• 대량살상무기(WMD) 및 재래식무기 이중용도 통제 품목 추가 • 북한제재위원회에 금지활동과 연관된 선박 지정 권한 부여 및 회원국의 동 선박 입항 불허 의무 • 회원국들의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제한 • 북한 석탄, 철, 철광석 수출 전면 금지 • 북한 납 및 납광석, 해산물 수출 금지
2375호 (2017. 9. 11.)	6차 핵실험 (2017. 9. 3.)	• 대량살상무기(WMD) 및 재래식무기 이중용도 통제 품목 추가 • 기국 동의하 금지품목 의심 선박에 대한 검색 촉구 •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 부여 금지 • 대북 유류 공급 제한 •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2397호 (2017. 12. 22.)	화성-15형 발사 (2017. 11. 29.)	• 영토 및 영해에서 금수품 운송 또는 금지활동 연루 의심 선박대상 나포, 검색, 억류 • 북한 해외노동자 24개월 내 송환 • 대북 유류 공급 제한 • 북한의 식료품, 농산물, 기계류, 전자기기, 광물 및 토석류, 목재류, 선박 수출 금지 • 대북 산업용 기계류, 운송수단, 철강 및 여타 금속류 수출 금지 • 조업권 거래 금지 명확화

일반부록 7

북핵 문제 관련 주요 비핵화 합의

합 의	주요 내용(요약)
① 제네바 기본합의 (1994. 10. 21.)	• 흑연감속로를 경수로로 대체하기 위한 협력 • 북미 간 정치·경제 관계의 완전 정상화 지향 • 비핵화된 한반도의 평화·안보를 위한 협력 • 핵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협력
② 9.19 공동성명 (2005. 9. 19.)	•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 재확인 • 에너지, 교역,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증진 약속 •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에 약속 • 단계적 방식의 합의 이행 조치 합의
③ 2.13 합의 (2007. 2. 13.)	• 북한 내 핵시설의 폐쇄·봉인 및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 복귀, 모든 핵프로그램 목록 작성 협의 •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자대화 개시 • 대북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 직접적 관련 당사국 간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④ 10.3 합의 (2007. 10. 3.)	• 북한이 모든 현존 핵시설 불능화 및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 완료 • 북한은 핵 물질,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 재확인 • 중유 100만 톤 상당 대북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제공
⑤ 2.29 합의 (2012. 2. 29.)	• 북, 비핵화 사전조치 실행 • 미, 24만 톤의 영양지원 제공 • 미, 대북 적대의사 없음을 확인 • 북미관계 개선 및 문화·교육·체육 등 민간교류 확대
⑥ 판문점선언 (2018. 4. 27.)	• 공동번영 및 자주통일 •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⑦ 북미공동성명 (2018. 6. 12.)	•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 • 북한의 판문점선언 재확인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 전쟁포로, 전쟁실종자의 유해 수습 및 신원확인 유해 송환
⑧ 평양공동선언 (2018. 9. 19.)	•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교류·협력 증대 •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 • 미측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

일반부록 8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 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 지역(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까지의 구간)은 40km, 서부 지역(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 지역에서 15km, 서부 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

다만, 산불 진화, 지·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수정된 절차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붙임 1】

②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붙임 2】

③ 쌍방은 비무장지대 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붙임 3】

④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 붙임 4 】

③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통신·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붙임 5 】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남북 군사당국 간 채택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며, 그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①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②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18년 9월 19일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 부 장 관	인 민 무 력 상
송 영 무	조선인민군 대장 노광철

【 붙임 1 】

비무장지대 내 상호 감시초소(GP) 철수

1. 비무장지대 내 모든 감시초소를 완전히 철수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① 1단계 : 모든 화기 및 장비 철수

② 2단계 : 근무인원 철수

③ 3단계 : 시설물 완전파괴

④ 4단계 : 상호 검증

2. 비무장지대 내 모든 감시초소 철수를 위한 제반 조치들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진행한다.

3. 비무장지대 안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사적물과 유적, 유물들은 민족공동의 재산으로 원래 상태를 보존하여 관리한다.

4. 비무장지대 안의 1km 거리 내에 근접해 있는 양측의 11개 감시초소를 시범적으로 철수한다.

① 지역별로 철수할 양측 감시초소들은 다음과 같다.

- 동부 지역
  - ◦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1273호와 제1278호 사이의 쌍방초소
  - ◦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1123호와 제1135호 사이의 쌍방초소
  - ◦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799호와 제0808호 사이의 쌍방초소
- 중부 지역
  - ◦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652호와 제0660호 사이의 쌍방초소
  - ◦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679호와 제0683호 사이의 쌍방초소
  - ◦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717호와 제0724호 사이의 쌍방초소
- 서부 지역
  - ◦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023호와 제0027호 사이의 쌍방초소
  - ◦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034호와 제0043호 사이의 쌍방초소
  - ◦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155호와 제0166호 사이의 쌍방초소
  - ◦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212호와 제0216호 사이의 쌍방초소
  - ◦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233호와 제0240호 사이의 쌍방초소

② 양측의 11개 감시초소들에 대한 철수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한다.

【 붙임 2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1. 첫 단계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조치 방안을 협의·이행한다.

① 남·북·유엔사(이하 3자로 표기)는 2018년 10월 1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지뢰를 20일 안에 제거한다.

②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지뢰 제거가 완료된 때로부터 5일 내에 쌍방초소들과 인원 및 화력장비를 전부 철수한다.

③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 불필요한 감시장비를 철수하고, 협의를 통해 필요한 감시장비를 추가 설치하며,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④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조치 완료 상태를 2일간 공동으로 검증한다.

⑤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조치 완료 이후의 공동관리기구 구성 및 임무, 공동관리기구 운영 방식 등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비무장화 조치 이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관리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비근무조직 및 초소 설치

- 경비근무는 양측이 각각 35명 이하의 비무장 인원으로 수행한다.
- 경비근무 인원의 교대 및 순찰과 관련한 사항은 쌍방이 각자 규정하고 상호 통보한다.
- 양측 경비근무 인원들은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으로 「판문점 민사경찰」이라고 쓴 너비 15cm의 완장을 왼팔에 착용한다.
- 공동경비구역 북측 지역 「판문점 다리」 끝점에 남측 초소를, 남측 지역 진입초소 일대에 북측 초소를 새로 설치하며, 남과 북이 근접하여 근무한다.

② 건물 관리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자기 측 건물들은 각 측이 관리한다.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건물을 보수 또는 새로 건설해야 할 경우, 공동관리기구의 승인하에 진행한다.

③ 참관(방문)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대한 참관은 09시부터 17시까지의 사이에 진행한다.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관광객들과 참관 인원들의 자유왕래를 허용한다.

【 붙임 3 】

비무장지대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

1.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 설정과 지뢰 제거

①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 설정

-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은 강원도 철원지역 비무장지대의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489호~제0497호 구간에서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의 끝점 좌표는 다음과 같다.
  - 북측 : ㄱ) 북위 38° 17’ 35” 동경 127° 05’ 22”
    ㄴ) 북위 38° 18’ 23” 동경 127° 06’ 52”
  - 남측 : ㄱ) 북위 38° 16’ 38” 동경 127° 06’ 04”
    ㄴ) 북위 38° 17’ 26” 동경 127° 07’ 33”
- 공동유해발굴지역에 있는 양측의 감시초소와 장애물들은 전부 철수한다.

② 지뢰 제거

-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의 지뢰와 폭발물은 2018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완전히 제거한다.
- 쌍방은 비무장지대 자기 측 경계선으로부터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지뢰 제거 작업을 진행한다.
- 쌍방은 지뢰 제거 작업을 10시부터 12시까지, 15시부터 17시까지 총 4시간 진행하며, 경우에 따라 작업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한다.
- 쌍방은 시범 공동유해발굴지역 내 지뢰가 제거된 구역의 외곽선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표식물을 설치하며, 그에 대하여 상대측에 통보한다.
- 지뢰 제거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 이용은 상호 협조한다.
- 지뢰 제거 과정에서 발굴되는 유해들은 수습하여 공동으로 감식, 협의, 처리한다.

2. 공동유해발굴지역 내 남북도로 개설

① 비무장지대 공동유해발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 내에 남북 간 12m 폭의 도로를 개설한다.

② 도로는 각각 비무장지대 각 측 경계선으로부터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나가면서 지뢰 제거 작업을 선행한 후 개설하며, 군사분계선상에서 연결한다.

③ 굴착기를 비롯하여 도로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이용에 대해 상호 협조한다.

④ 도로개설 작업 인원과 장비들의 수량과 식별표식, 작업시간은 각기 편리하게 정하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⑤ 도로연결과 관련하여 일방의 인원이나 차량들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에 통보한다.

⑥ 도로개설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한다.

3. 공동유해발굴단 구성과 운영

① 공동유해발굴단의 구성

- 쌍방은 대령급을 책임자로 하여 각각 5명씩의 유해발굴 공동조사 및 현장지휘조를 구성한다.
- 유해발굴단은 쌍방에서 각각 80~100명 정도로 구성한다.
- 쌍방은 2019년 2월 말까지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하여 상호 통보한다.

② 공동유해발굴단의 운영

- 유해발굴 공동조사 및 현장지휘조는 비무장지대의 시범적 공동유해발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공동으로 협의하여 해결한다.
-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의 공동유해발굴은 2019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진행한다.
-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의 유해발굴 작업시간은 계절 특성을 고려하여 9시부터 12시까지, 15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단축 또는 연장한다.

4. 안전보장 및 공동관리

① 공동유해발굴 과정에서 상대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침해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한다.

② 공동유해발굴지역에 무기, 폭발물 등 신변안전을 위협하는 물자 및 장비의 반입을 불허한다.

③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④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복구 대책을 수립하여 상호 협력한다.

⑤ 공동유해발굴이 완료된 후 중앙군사분계선으로부터 자기 측 경계선까지의 지역과 도로에 대해서는 각 측이 책임지고 관리하며, 도로 이용과 관련한 문제는 추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 붙임 4 】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및 평화수역 설정,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

1. 평화수역 설정

1) 평화수역 범위

평화수역 범위는 쌍방의 관할하에 있는 섬들의 지리적 위치, 선박들의 항해밀도, 고정항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2) 평화수역 출입 질서

① 평화수역에는 쌍방의 비무장 선박들만 출입한다. 해군 함정들이 평화수역으로 불가피하게 진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하에 출입한다.

② 평화수역 내에서 활동하는 선박 수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선박들의 평화수역 출입 및 활동 계획은 48시간 전에 상호 통보한다.

③ 평화수역 출입시간은 4월부터 9월까지는 7시부터 18시, 10월부터 3월까지는 8시부터 17시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평화수역에서의 행동 질서

① 평화수역에서 남측 선박은 평화수역 북경계선을, 북측 선박은 평화수역 남경계선을 넘지 않으며, 평화적 활동으로만 한정한다.

평화수역을 벗어나 상대측 수역에서 상대측에 대한 적대행위를 하는 선박들에 대해서는, 적대행위를 즉시 제지시키고 상대측에 통보한 후 남과 북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평화수역에서 쌍방 선박들은 식별을 위하여 가로 900mm×세로 600mm 크기의 한반도기를 남측 선박은 마스트 좌현 기류줄에, 북측 선박은 마스트 우현 기류줄에 게양한다.

③ 평화수역에서 심리전 행위를 비롯하여 상대측을 자극하는 일체 언행을 하지 않는다.

④ 평화수역에서 민간선박들 사이에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자기 측의 모든 선박 등을 평화수역 밖으로 철수시키고, 남북 군 통신선 혹은 남북군사실무회담을 통하여 사태를 수습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운다.

4) 평화수역에서 인도주의적 협력 문제

개별 인원과 선박, 함정, 항공기 등이 기관고장, 조난, 기상악화로 인한 항로미실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평화수역에 들어가는 경우 상대측에 연락 수단을 통해 즉시 통보한다.

평화수역 안에서 상기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평화수역 활용

쌍방은 서해 평화수역을 군사적 긴장 완화·신뢰 구축 및 공영·공리 원칙에 맞게 해양 측량·공동조사, 민간선박 운항 등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2.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

1) 시범 공동어로구역 범위

시범 공동어로구역 범위는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2) 시범 공동어로구역 운용질서

① 시범 공동어로구역에서 조업하고자 하는 어선들은 기관(소속) 명칭, 선장(대표자), 선원명단, 어선명, 출입경로, 조업일자 등이 기록된 출입신청 문건을 출입예정 2일(48시간) 전까지 상대측에 제출한다.

② 쌍방 해당기관은 어선의 출항예정 1일(24시간) 전까지 출입 신청서 검토 결과(동의 여부)를 상대측에 통보하되, 출입이 허가되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와 함께 통보한다.

③ 쌍방 해당기관은 시범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일정 기간 연속조업을 신청한 어선들에 대하여 최대 5일간까지 공동어로구역 내 체류를 허가한다.

④ 시범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어선들은 상호 승인한 경로를 이용하며 쌍방 어업지도선의 통제를 받도록 한다.

⑤ 향후 평화수역 내에 공동어로구역을 확대하여 설정하는 경우, 남북 어선들의 공동어로구역 출입 질서와 관련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3. 불법어선 차단 및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공동순찰

1) 남북공동순찰대 조직

① 쌍방은 해경정(경비정)으로 '남북공동순찰대'를 조직한다. 공동순찰정은 250톤급 이하로 한다.

② 공동순찰을 실시하는 순찰정은 쌍방이 각각 3척(총 6척)으로 하며 합의에 따라 척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남북공동순찰대의 순찰정들은 가로 900mm×세로 600mm 크기의 황색 깃발을 선박 마스트 상단 부분에 게양한다.

2) 남북공동순찰대의 임무

① 서해 해상의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통하여 평화수역에 진입하는 제3국 불법 어선들을 차단하며,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여 단속·처리한다.

② 시범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남북 어선들과 어업지도선들의 항행질서를 통제한다.

③ 기관고장, 조난, 기상악화 등으로 표류하는 쌍방의 선박들을 구조하고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돌려 보낸다.

3) 남북공동순찰대의 운용

① 남북공동순찰대의 순찰정들은 공동어로구역 내로 진입을 금지한다. 다만, 공동어로구역 내 조난, 인명구조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상대측에 통보 후 진입할 수 있다.

② 공동순찰은 조업 일정과 제3국 불법조업선박 차단 등과 연계하여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한 날짜에 진행한다.

③ 공동순찰은 주간(4월부터 9월까지는 8시부터 18시까지, 10월부터 3월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기 측 공동순찰대의 순찰계획은 24시간 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야간에 발생하는 상황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④ 공동순찰은 공동어로구역 외곽선을 따라 순방향 또는 역방향으로 상호 합의하여 기동한다.

⑤ 남북공동순찰대는 각기 자기 측 상부의 지휘에 따라 행동하며, 쌍방 순찰정 간 교신, 호출부호 등은 2004년 「6.4 합의서」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⑥ 공동순찰 과정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며, 상황 발생 시 즉시 순찰정을 격리시키고 상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 붙임 5 】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의 군사적 보장

1. 공동이용수역 설정

①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으로부터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로부터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70km에 이르는 한강(임진강) 하구 수역을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한다.

② 공동이용수역 안에서 제기되는 모든 군사 실무적 문제들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2. 공동조사

①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는 2018년 12월 말까지 공동으로 진행한다.

② 공동조사단은 쌍방에서 해당 전문가를 포함하여 각각 10여 명의 인원들로 구성한다.

③ 공동조사에 필요한 장비, 기재, 선박 이용 문제는 상호 협조한다.

④ 현장조사 인원들은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금지하며, 폭발물 및 각종 무기, 총탄 등을 휴대하지 않는다.

⑤ 공동조사 중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가까운 상대측 지역에 정박할 수 있으며 상대측 인원들의 신변 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3. 공동이용수역에서의 군사적 보장 대책

① 공동이용수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선박의 형태, 길이 및 톤수, 출입목적, 탑승인원 수, 적재화물)에 대한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서해지구 남북 군 통신선을 통해 1일 전에 상호 통보한다.

② 공동이용수역 내 쌍방이 합의한 위치에 각 측 통행검사소를 설치하고 출입인원과 선박들에 대한 통행검사를 진행한다.

③ 공동이용수역에 항행하는 선박들은 상대측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한다.

④ 공동이용수역에서 선박들의 통행시간은 육안으로 관측이 가능한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7시부터 19시까지,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8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⑤ 공동이용수역에서 항행하는 인원 및 선박들은 정찰 및 감시 장비, 폭발물 및 각종 무기, 총탄 등을 일체 휴대하지 않는다.

⑥ 공동이용수역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⑦ 쌍방 선박은 상호 충돌을 피하기 위한 항행신호 교환을 제외하고 상대측 선박과 연락 및 통신을 할 수 없다.

⑧ 공동이용수역 내에서 선박이나 인원이 표류하거나 기타 요인에 의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인도주의 원칙에서 상호 협력한다.

4. 공동이용수역에서의 남북 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보장 대책은 쌍방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간다.

일반부록 9

남북 군사관계 일지

(2016. 12. 1. ~ 2018. 11. 30.)

북 측	일 자	남 측
김정은 위원장, 수도권을 타격 목표로 설정한 포병사격훈련 현지 지도	2016. 12. 1.	
김정은 위원장, 청와대 타격 전투훈련 현지지도	12.11.	
신년사 발표 * "ICBM 시험발사 준비 마감 단계, 핵무력 중심 선제공격 능력 계속 강화, 남북관계 개선 대책을 세워야"	2017. 1. 1.	정부, ICBM 시험발사 준비 마감 단계 주장 강력 규탄 *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
	1. 20.	한·미·일,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능력 배양을 위한 미사일 경보훈련 실시(1. 20. ~ 1. 22.)
탄도미사일 1발 발사(평북 구성)	2. 12.	정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규탄 성명 발표 * "한반도 및 국제 사회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
인민군 총참모부 담화, "한미 연합훈련 비난, 초강경 대응 조치 위협"	3. 1.	한미, KR/FE 연합연습 시작 * KR : 3. 13. ~ 3. 24., FE : 3. 1. ~ 4. 30.
탄도미사일 4발 발사(평북 동창리)	3. 6.	정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규탄 성명 발표 *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강력히 규탄"
전략군 대변인 담화, 탄도미사일 발사 정당화 * "초정밀화된 로케트들로 임의 시각, 임의 지점에 적들을 타격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갈 것"	3. 9.	
신형 대출력 미사일 엔진시험 실시(평북 동창리)	3. 19.	
총참모부 대변인 경고, KR/FE 연습 관련 * "우리식 선제타격으로 무자비하게 짓뭉갤 것"	3. 26.	합참, 북한 총참모부 대변인 경고 관련 입장 발표 * "북한 궤변에 대응 가치 없음. 도발 시 단호히 응징"
탄도미사일 1발 발사(함남 신포)	4. 5.	정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규탄 * "북한 정권의 무모한 도발이 자멸을 앞당길 것"
	4. 6.	북한 전역 사정권 800km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 "북한 지휘부 응징 핵심무기, 북한 미사일 도발에 경고"
김일성 생일 105주년 열병식 진행	4. 15.	
탄도미사일 1발 발사(함남 신포)	4. 16.	정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경고 *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위협 시위"
인민군 창건 85주년 화력훈련 진행	4. 25.	
	4. 26.	2017 통합 화력격멸 훈련 실시
탄도미사일 1발 발사(평남 북창비행장)	4. 29.	정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규탄 * "강력한 징벌적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
탄도미사일 1발 발사(평북 구성)	5. 14.	정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규탄 성명 발표 * "일체의 도발중단 촉구"

북 측	일 자	남 측
탄도미사일 1발 발사(평남 북창)	5. 21.	정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규탄 성명 발표 *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
탄도미사일 1발 발사(강원 원산)	5. 29.	정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규탄 성명 발표 * "일체의 도발 중단 및 조속한 비핵화 촉구"
아태위 담화, 한반도 내 연합·합동 훈련 비난	6. 1.	
지대함 순항 미사일 발사(원산 일대)	6. 8.	
탄도미사일 1발 발사(평북 방현)	7. 4.	정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규탄 성명 발표 *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조속한 비핵화 대화의 길로 나와야"
	7. 5.	한미, 북한 도발 대응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 실시
조선중앙 TV, 김정은 위원장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격려행사 보도	7. 13.	
	7. 17.	국방부·통일부, 남북군사회담·적십자회담 동시 제의 * 7. 21. 판문점 통일각에서 적대행위 중단 관련 논의 촉구
	7. 21.	정부, 남북군사회담 개최 촉구
탄도미사일 1발 발사(자강 무평)	7. 28.	
	7. 29.	정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규탄 성명 발표 * "비핵화 및 평화 구축 호응 촉구"
	8. 5.	유엔 안보리,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2371호) 채택
정부 성명, 유엔 안보리 결의(2371호) 관련 비난 * "자주권 침해, 정면 도전이라며 전면배격 위협"	8. 7.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발표 *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계획 비난 및 군사적 대응 위협"	8. 8.	
	8. 21.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실시(8. 21. ~ 8. 31.)
판문점대표부 담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관련 비난	8. 22.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동해상)	8. 26.	
탄도미사일 1발 발사(평양 순안비행장)	8. 29.	정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규탄 성명 발표 * "무모한 도발 대신 조속한 비핵화 길로 나와야"
수소탄 탑재 핵탄두 공개 주장 풍계리 핵실험장 6차 핵실험 감행	9. 3.	정부, 6차 핵실험 강력 규탄 성명 발표 *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용납하지 않을 것" 동해상 대북 억제 타격훈련 실시
탄도미사일 1발 발사(평양 순안비행장)	9. 15.	정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규탄 성명 발표 *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해 매우 심대하고 엄중한 도전"
조중통, 김정은 위원장 탄도미사일 발사 명령 및 훈련 참관 공개	9. 16.	
김정은 위원장 명의 성명 발표 * "트럼프가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해 온 이상 상응한 사상 최고의 대응조치 단행을 신중히 고려할 것"	9. 21.	

북 측	일 자	남 측
	10. 16.	한미 해군, 동·서해에서 한미 연합해상훈련 실시(10. 16. ~ 10. 20.)
	10. 27.	한미 MCM, 북한 핵·미사일 대응 연합방위태세 강화
	11. 12.	한미 해군, 동해에서 연합해상훈련(11. 12. ~ 11. 14.) 실시
군인 1명, 판문점 JSA에서 귀순 * 귀순 과정에서 추격하던 북한군의 총격 발생	11. 13.	유엔 총회, 「평창 동계올림픽 휴전결의」 채택 * 올림픽·패럴림픽 기간(2018. 2. 9. ~ 3. 8.) 전후 7일간
	11. 22.	유엔사(UNC), JSA 귀순 조사결과 발표, 북한 정전협정 위반 명시
탄도미사일 1발 발사(평남 평성) 국가 핵무력 완성 성명 발표	11. 29.	정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규탄 성명 발표 *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 지·해·공 미사일 합동 정밀타격훈련 시행
외무성 성명, 한미 연합공군훈련 관련 비난 * "미국 핵전쟁 구걸, 핵전쟁 발생 시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	12. 2.	
	12. 4.	한미 공군, 연합공중훈련(Vigilant Ace) 실시(12. 4. ~ 12. 8.)
	12. 11.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12. 11. ~ 12. 12.) 실시
신년사 발표 * "대미 핵억제력 보유, 대남 유화 메시지(긴장 완화·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등)"	2018. 1. 1.	
	1. 3.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간 연락 채널 재가동 * 2016. 2. 12. 중단
	1. 4.	한미 정상, 올림픽 기간 중 한미연합훈련 연기 합의
	1. 9.	남북고위급회담 개최(평화의 집), 공동보도문 채택 * 북한 대표단 방남, 군사당국회담 개최, 각 분야 회담 개최
인민군 창건일 70주년 열병식 진행	2. 8.	
고위급 대표단 서해 직항로 방남(2. 9. ~ 2. 11.) * 김영남, 김여정, 최휘, 리선권 등	2. 9.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고위급 대표단 경의선 육로 방남(2. 25. ~ 2. 27.) * 김영철, 리선권 등	2. 25.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3. 5.	대북 특별사절단 방북(3. 5. ~ 3. 6., 서해직항로) *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3. 6.	대북 특별사절단 방북 결과 언론 발표 * ①남북 정상 회담 개최, ②정상 간 핫라인 설치, ③북 비핵화 의지, ④북미대화 용의, ⑤핵·미사일 도발 중단 및 핵·재래식 무기 대남 불사용, ⑥남 태권도·예술단 방북
김정은 위원장 1차 방중(3. 25. ~ 3. 28.)	3. 25.	
	4. 1.	한미, KR/FE 연합연습 시작 * KR : 4. 23. ~ 5. 4., FE : 4. 1. ~ 4. 26.

북 측	일 자	남 측
김정은 위원장, 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 진행 * 남북 정상 회담 개최 및 북미대화 첫 공식 언급	4. 9.	
제13기 6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김정은 위원장 추대 6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 최룡해, "군사대국, 전략국가의 지위" 언급	4. 11.	
당 중앙위 제7기 3차 전원회의, 결정서 채택 *【핵】①핵무기 병기화 ②핵·미사일 실험 중단 ③핵군축 국제적 노력 동참 ④핵 비사용·비확산 ⑤경제·민생 집중 ⑥국제 사회 대화 참여 *【경제】①경제 집중 ②기관 역할 강화 ③결정이행 관리 ④관련 실제적 조치	4. 20.	
대남 확성기 방송 중단	4. 23.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4. 27.	2018 남북 정상 회담 개최, 「판문점선언」 채택 *【남북관계】 민족자주, 분야별 대화, 교류 협력 활성화, 이산가족 상봉, 철도·도로 연결 *【군사 분야】 적대행위 중지, DMZ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 5월 장성급회담 *【비핵·평화】 불가침, 단계적 군축, 종전 선언, 완전한 비핵화
"핵실험장 폐쇄 공개, 서울 표준시로 통일" * 4. 27. 정상 회담 간 발언 공개	4. 29.	
대남 확성기 시설 철거 개시	5. 1.	대북 확성기 시설 철거 개시
김정은 위원장, 2차 방중(5. 7. ~ 5. 8.)	5. 7.	
	5. 11.	한미, Max-Thunder 훈련(5. 11. ~ 25.)
외무성, "핵실험장 폐기(5. 23. ~ 5. 25.), 기자단 취재 허용"	5. 12.	
핵실험장 폐기 외신 기자단(미·중·러·영) 방북	5. 22.	
핵실험장 폐기 우리 기자단 방북	5. 23.	
제2차 남북 정상 회담 개최(통일각)	5. 26.	
김영철·폼페이오 고위급회담 개최(뉴욕)	5. 31.	
	6. 1.	남북고위급회담 개최(평화의 집) * 군사회담 6월 14일, 체육회담 6월 18일, 적십자회담 6월 22일 개최 합의
북미 정상 회담(싱가포르) 개최 * 「센토사합의」(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 등)	6. 12.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통일각) * 「6.4 합의」 이행, 군 통신선 완전 복구 등 합의	6. 14.	
김정은 위원장, 3차 방중(6. 19. ~ 6. 20.)	6. 19.	한미, 2018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유예 발표
	6. 22.	한미,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MEP) 연기

북 측	일 자	남 측
	6. 25.	군통신선 복구를 위한 '남북통신실무접촉' 개최(남북출입사무소)
남북, 서해 해상 '국제상선 공통망' 운용 정상화	7. 1.	남북, 서해 해상 '국제상선 공통망' 운용 정상화
	7. 10.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잠정 유예' 발표
	7. 14.	유엔 대북제재위, 군 통신선 복원 관련 제재 예외 인정
유엔사·북한군 장성급회담(유해송환 관련) 개최(통일각)	7. 15.	
유엔사·북한군 대령급회담(유해송환 관련) 개최(통일각)	7. 16.	남북, 서해지구 군 통신선 복구 및 정상화 * 2016. 2. 11. 단절
미군 유해 55구 송환	7. 27.	
	7. 31.	제9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평화의 집) * JSA 비무장화, 유해공동발굴, 적대행위 중지 등 견해 일치
	8. 15.	남북 동해지구 군 통신선 복구 및 정상화 * 2010. 11. 28. 산불로 소실
	9. 5.	대북 특별사절단 방북(서해 직항로)
	9. 7.	유엔사·북한군 장성급회담 개최(자유의 집, 유해송환·발굴 관련)
정권 설립 70주년 기념 열병식 진행	9. 9.	
제40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9. 13. ~ 9. 14., 통일각) *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 논의	9. 13.	
2018 남북 정상 회담 평양 개최(9. 18. ~ 9. 20., 평양)	9. 18.	
「평양공동선언」 채택 *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전쟁위험 제거, 교류협력 확대, 인도적 협력 강화 등 합의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 *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 설정, 군사적 신뢰구축 등 합의	9. 19.	
남북, JSA·공동유해발굴지역 지뢰 제거 개시	10. 1.	남북, JSA·공동유해발굴지역 지뢰 제거 개시
	10. 12.	남북군사실무접촉 개최(판문점) * 군사 분야 합의서 이행 관련 실무적 문제 협의
	10. 15.	남북고위급회담 개최(평화의 집) * 장성급군사회담 개최, 철도·도로 현대화 착공식 진행 등
	10. 16.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1차, 자유의 집)
	10. 19.	한미 연합공중훈련(Vigilant Ace) 연기 발표
JSA 지뢰 제거 완료	10. 20.	JSA 지뢰 제거 완료
	10. 22.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2차, 자유의 집)

북 측	일 자	남 측
	10. 23.	「평양공동선언」,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
	10. 24.	공동유해발굴(화살머리) 첫 국군(추정) 유해 발견
JSA 초소·인원·화기 철수 완료	10. 25.	JSA 초소·인원·화기 철수 완료
남북, 제10차 장성급군사회담 개최(통일각) * 11월 1일부 적대행위 금지, 11월 말까지 시범철수 대상 GP 철수 및 완전파괴 이행 등 합의	10. 26.	남·북·유엔사 3자 공동검증(10. 26. ~ 10. 27., JSA)
	10. 29.	태극연습(10. 29. ~ 11. 2.)·호국훈련(10. 29. ~ 11. 9.) 개시
	10. 31.	한미 국방장관, 「연합방위지침」 서명
남북, 지·해·공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 남북, 상호 11개 GP에 대한 화기·장비 및 인원 철수 개시	11. 1.	남북, 지·해·공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 남북, 상호 11개 GP에 대한 화기·장비 및 인원 철수 개시
남북, 제3국 불법조업 선박 정보교환 재개 * 2008년 5월 이후 중단	11. 2.	남북, 제3국 불법조업 선박 정보교환 재개 * 2008년 5월 이후 중단
남북,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개시(11. 5. ~ 12. 9.)	11. 5.	남북,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개시(11. 5. ~ 12. 9.) 한미,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MEP) 재개
	11. 6.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3차, 자유의 집)
남북, 상호 11개 GP에 대한 화기·장비 및 인원 철수 완료	11. 10.	남북, 상호 11개 GP에 대한 화기·장비 및 인원 철수 완료
남북, 상호 10개 GP(보존 1개소 제외)에 대한 시설물 철거 개시	11. 11.	남북, 상호 10개 GP(보존 1개소 제외)에 대한 시설물 철거 개시
	11. 12.	남·북·유엔사 3자 감시장비 실무협의체 개최(판문점)
남북, 상호 10개 GP(보존 1개소 제외)에 대한 시설물 철거 완료	11. 30.	남북, 상호 10개 GP(보존 1개소 제외)에 대한 시설물 철거 완료

일반부록 10

북한의 대남 침투·국지도발 일지

연대별 침투 및 국지도발 현황

구 분	계	1950 년대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3,119	398	1,336	403	227	250	241	251	8	5	0
침 투	2,002	379	1,009	310	167	94	16	24	1	2	0
국지도발	1,117	19	327	93	60	156	225	227	7	3	0

* 2018년은 11월 30일까지 현황

침투 및 국지도발 일지(2016. 12. 1. ~ 2018. 11. 30.)

일 자	주요 내용
2017. 1. 17.	북한 상선, 동해 거진 동방 NLL 침범
6. 9.	북 소형무인기, 강원도 인제 일대 추락
6. 24.	탈북가장, 침투 간첩 검거
비공개	탈북가장, 침투 간첩 검거(비공개)
11. 13.	JSA 지역, 북한군 귀순 시 총격

연대별·유형별 침투 및 국지도발 세부 현황

구 분		계	1950 년대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3,119**	**398**	**1,336**	**403**	**227**	**250**	**241**	**251**	**8**	**5**	**0**
침투	직접침투	1,749	375	988	298	38	50	0	0	0	0	0
	간접침투	214	0	0	0	127	44	16	24	1	2	0
	월북·납북자 간첩 남파	39	4	21	12	2	0	0	0	0	0	0
	소 계	**2,002**	**379**	**1,009**	**310**	**167**	**94**	**16**	**24**	**1**	**2**	**0**
국지도발	지상 도발	502	7	298	51	44	48	42	11	0	1	0
	해상 도발	559	2	22	27	12	107	180	203	5	1	0
	공중 도발	51	10	7	15	4	1	3	9	1	1	0
	전자전·사이버공격	5	0	0	0	0	0	0	4	1	0	0
	소 계	**1,117**	**19**	**327**	**93**	**60**	**156**	**225**	**227**	**7**	**3**	**0**

일반부록 11

연합·합동연습 및 훈련 현황

한미 연합연습

연습명	형 태	목 적	내 용
을지프리덤가디언 (UFG)	군사지휘소 및 정부연습	• 현 연합방위체제하 전구작전 지휘 및 전쟁수행 연습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한국 합참·주한미군사령부의 전구작전 지휘 및 수행능력 배양 • 군사연습과 연계하여 충무계획 및 전쟁수행예규 수행절차 숙달	• 위기관리 절차 연습 • 전시전환 절차 연습 • 작전계획 시행절차 연습 • 주요지휘관세미나 • 군사협조기구 운영 연습 등
키리졸브/독수리 (KR/FE)연습	지휘소 연습 및 야외기동훈련	• 현재의 연합방위태세 점검 및 전쟁수행 절차 숙달 • 한미 연합작전 및 후방지역 방호작전 능력 배양	• 위기관리 절차 연습 • 전시전환 절차 연습 • 작전계획 시행절차 연습 • 연합작전지역 내 수용, 대기, 전방이동 및 통합절차 숙달 • 한미 연합실기동훈련 등

한국군 합동연습 및 훈련

연습명	형 태	목 적	내 용
태극연습	전구급 지휘소연습	• 합참 주도의 작전지휘능력 배양	• 작전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위협을 대비한 작전수행 절차 연습
호국훈련	작전사급 야외기동훈련	• 합동작전 수행 및 전력 운용능력 배양	• 국지도발 및 전면전 관련 작계시행훈련 • 작전환경 변화에 따른 작전수행 절차 적용 훈련
후방지역 종합훈련 (화랑훈련)	권역별 민·관·군·경 통합방위훈련	• 전·평시 작계시행 절차 숙달 • 지역주민 안보의식 고취 •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인	• 침투·국지도발 대비 작전 • 전시전환 • 전면전 대비 작전

일반부록 12

국제 방산협력협정 체결 현황

국제 방산협력협정(양해각서) 체결국 : 39개국

2018년 12월 기준

상대국	체결년도	상대국	체결년도	상대국	체결년도	상대국	체결년도
미국	1988. 6.	태국	1991. 11.	스페인	1992. 3.	영국	1993. 9.
필리핀	1994. 5.	이스라엘	1995. 8.	인도네시아	1995. 10.	캐나다	1996. 5.
독일	1997. 11.	러시아	1997. 11.	루마니아	1997. 11.	네덜란드	1999. 6.
터키	1999. 11.	베네수엘라	1999. 12.	베트남	2001. 8.	호주	2001. 8.
방글라데시	2004. 1.	인도	2005. 9.	파키스탄	2006. 5.	우크라이나	2006. 12.
콜롬비아	2008. 5.	이집트	2009. 12.	에콰도르	2010. 1.	우즈베키스탄	2010. 2.
페루	2010. 6.	UAE	2010. 9.	노르웨이	2010. 9.	덴마크	2011. 5.
폴란드	2014. 5.	칠레	2015. 8.	체코	2015. 8.	핀란드	2016. 6.
헝가리	2016. 7.	프랑스	2016. 8.	보츠와나	2017. 1.	에스토니아	2017. 2.
크로아티아	2017. 2.	사우디아라비아	2017. 9.	카자흐스탄	2017. 10.		

기타 방산협력 관련 협정(양해각서) 체결 현황

2018년 12월 기준

구 분	국제기술협력 협정 (12개국)	품질보증 협정 (23개국)	가격 정보 제공 협정 (4개국)
국 가	미국,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러시아, 터키, 인도, 콜롬비아, 노르웨이, 스웨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캐나다,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필리핀, 독일, 이스라엘, 터키, 뉴질랜드,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스웨덴, 페루, 노르웨이, 콜롬비아, 베트남, 파키스탄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일반부록 13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공동성명

2017년 10월 28일, 서울

1.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2017년 10월 28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송영무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합중국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17년 10월 27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정경두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죠셉 던포드 대장이 제42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들에 기반한 양국 간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함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공동의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가 고위 정책적 감독과 협력을 제공함으로써 동맹 목표의 구현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와 동시에 양 장관은 안보상황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동맹의 우선 현안들을 추진하기 위해 상시 긴밀한 소통과 결심수립 메커니즘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의 제6차 핵실험과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전례 없는 수준의 무모하고 파괴적인 도발행태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확산 활동이 국제 사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며 한반도는 물론 지역의 안정, 세계 안보,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재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상 약속을 이행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 2321호, 2356호, 2371호, 2375호 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여타 현존하는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이러한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 중단만이 북한 정권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이러한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가장 선호하는 경로로써 외교적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이러한 외교적 노력이 강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4. 양 장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로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한미동맹 본연의 임무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 안보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강력함에 대해 확고한 신뢰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 도발에 대해 방어하고 대응하기 위한 태세를 유지하며 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제6차 핵실험과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로 말미암은 안보환경을 감안할 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연합훈련을 지속 실시해야 하는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하기로 한 양국 정상 간 합의를 기초로 EDSCG 관련 새로운 운영체제 설립 방안을 마련한 것을 평가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차기 EDSCG 회의를 개최키로 하였다. EDSCG 메커니즘은 외교·정보·군사·경제적 조치에 대한 심도 있는 협력을 통해 동맹의 대북 억제태세를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양 장관은 북한의 그 어떤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침략 또는 군사적 도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 양국이 공동의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매티스 장관은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5. 매티스 장관은 자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지속적인 정책을 재확인하였다. 매티스 장관은 미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WMD 그리고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억제방안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증진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의 신뢰성, 능력, 지속성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 및 한반도 인근에 대한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와 연계하여, 미 해군 및 공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 및 강도가 증가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맞춤형 억제전략(TDS)과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미 확장억제전략위원회(DSC) 및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계기에 확장억제 관련 정책·절차와 협력 메커니즘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억제태세를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협력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6. 양 장관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 사드포대의 작전운용태세를 갖추도록 한 동맹의 결정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종결될 때까지는 사드 배치가 임시적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강조하였으며, 사드체계가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7. 양 장관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시켜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양국은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동맹의 대응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송 장관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독자적 핵심군사능력으로서 동맹의 체계(사드, 패트리엇 포함)와 상호 운용 가능한 Kill-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여타 동맹 시스템을 조속히 발전시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향상시켜 나갈 것임을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교란·파괴·방어 능력을 위한 투자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 장관은 미사일 지침상 탄두중량을 해제하자는 양국 정상의 합의를 가장 빠른 계기에 이행키로 하였다.

8. 양 장관은 양국 군이 한미동맹의 효과적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 한반도의 다양한 위기 상황에 관한 군사계획을 지속 발전시키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일대에서의 그 어떤 북한 도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합연습 및 훈련을 증진시키고 연합 대비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송 장관은 매티스 장관에게 NLL이 지난 60여 년간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이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미 장관은 한 장관의 입장에 존중을 표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정전협정과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해군협력을 지속하여, 증가하는 북한의 해양도발에 대한 양국의 대응능력을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한미 해군 간 연합 항모강습단 훈련, 탄도미사일 경보훈련, 대잠전 훈련 등 기 실시된 다양한 연합 해군훈련을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훈련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2016년 2월 주한미해군사령부가 대한민국 해군작전사령부가 위치한 부산작전기지 내로 이전한 이후 한미 해군 간 협력이 증진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미 해군 함정들의 부산, 진해, 제주 등 한 해군 주요 작전기지 방문을 높이 평가하였다.

9.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 지원,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 등을 포함하여 상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처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매티스 장관은 국제 사회의 ISIS 대응 노력, 아덴만 해적퇴치 활동,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등에 대한 기여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송영무 장관은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여 ISIS 격퇴 노력 등을 포함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더불어, 매티스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대량살상무기(WMD) 확보 및 사용 방지, 필요시 WMD 위협을 경감시켜 동맹의 연합대응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한미 WMD 대응(CWMD)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추가적으로 양 장관은 한미 화생방대응훈련(Adaptive Shield) 연습이 다양한 화생방 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응능력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더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양 장관은 우주 및 사이버공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및 우주 시스템을 비롯한 핵심 인프라 안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금년 9월 워싱턴에서 최초로 우주협력 TTX를 개최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우주영역의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양국 간 공조를 확대하고, 우주임무를 보장하도록 우주역량을 증진하며, 우주상황인식 분야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최근 증가되고 있는 사이버위협과 미 사이버사령부가 통합전투사령부로 격상된 것에 주목하면서, 사이버 역량을 핵심 안보역량으로 인식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양국 국방당국 간 관련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정례적인 양자회의와 한미 사이버실무협의체를 통해 공동의 협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지난해 SCM 이후 한미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를 통하여 로봇과 자율기술 분야 협력과제를 선정하고 과제 목표 및 일정을 수립하는 등 관련 협력이 진전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국방과학기술 협력이 동맹의 국방능력과 상호운용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관련 협력을 한층 심화시키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 장관은 브룩스 한미 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상시 전투태세(Fight Tonight)'의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 불안정 사태 또는 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요지의 MCM 결과를 보고 받았다.

12.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2017년 6월 양국 정상의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송영무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핵심 능력 획득 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전작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MCM으로부터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보고 받고, 연합연습 및 검증을 통해 보완·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전작권 전환 이후 보다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발전을 위한 추진지침을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동맹의 능력 확보계획, 전략문서·작전계획, 연합연습·검증계획 등 이행계획을 재점검하고, 제50차 SCM까지 조건에 기초한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보완시키기로 하였다.

13.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사업이 적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올해 미8군사령부 등 평택기지로의 부대이전이 본격화된 것에 주목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주한미군사령부, 미2사단사령부 등 대부분의 잔여부대들의 이전이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매티스 장관은 평택기지가 훌륭하게 조성되고 부대이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해준 한측의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한미 양국은 나머지 부대이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공동환경평가절차(JEAP)에 따라 기지 반환

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14. 양 장관은 한미일 3국이 아태지역에서 공동의 안보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데에 공감하면서, ICBM과 SLBM을 포함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이 3국의 안보와 번영에 위협이 됨을 분명히 하였다. 양 장관은 미사일 경보훈련과 대잠전 훈련을 포함한 연습을 지속 실시하기로 의견을 같이하였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보공유 및 미 전략폭격기와 여러 차례 실시한 연합 비행훈련을 포함하여 대응능력 증진을 위한 3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양 장관은 3국 간의 정보공유 증진과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3국 간 안보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15. 양 장관은 대한민국의 방위비분담이 한반도에서의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매티스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 보장과 포괄적 안보분담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16. 양국 장관은 지난해 7월 방산기술전략·협력체(DTSCG) 회의가 최초로 개최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한미동맹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보호, 외교정책, 방산기술협력에 대한 정책적·전략적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차기 DTSCG를 가까운 시일 내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17. 송영무 장관은 한반도 방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고 지난 10월 26일 창설 100주년을 맞이한 주한미군사 미2사단 장병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표하였다.

18. 양 장관은 이번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49차 SCM과 제42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가 상호보완적 한미동맹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제50차 SCM을 2018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끝.

일반부록 14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공동성명

2018년 10월 31일, 워싱턴 D.C.

1.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2018년 10월 31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정경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합중국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18년 10월 25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박한기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죠셉 던포드 대장이 제43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1968년 5월 28일 최초로 개최된 이래 한미동맹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SCM이 지난 반세기 동안 한미동맹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율해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에도 SCM이 한미동맹 발전과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공약을 확인하는 중추적인 협의체로 지속 유지될 것이라는 큰 기대를 표명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향후 발생가능한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한미동맹의 국방 분야 협력을 한층 더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의 비전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및 지역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달성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세 차례 남북 정상 회담과 싱가포르 북미 정상 회담에서의 건설적인 공약을 확인하고, 추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 선언,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위한 조치 등 북한이 취한 조치들에 대해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과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간의 싱가포르 정상 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공약들을 이행하고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이행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은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4. 정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과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대한민국이 북한 군사당국과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신뢰구축 조치들에 대해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노력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양측은 「역

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연합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실질적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그 이행과정에서 한미 국방당국 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지난 65년간 한반도 정전체제의 수호자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해왔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남북 및 북미 정상 회담 합의에 기초하여 외교적 노력을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국제 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정 장관은 북방한계선(NLL)이 그동안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고 평가하고, 평양 남북 정상 회담 시 합의된 서해 해상에서의 완충구역이 상호 우발적 충돌의 근원적 방지는 물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이에 매티스 장관은 이러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5.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평가하며,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로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한미동맹 본연의 임무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 안보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65년간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에 핵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고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매티스 장관은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의 현 전력수준을 지속 유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매티스 장관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향후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면서 한미동맹의 억제태세를 제고하고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양 장관은 1978년 11월 7일 창설된 이후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온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의 창설 40주년을 맞이하여 한미 양국 군 장병들에게 감사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의 국방부 영내 이전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본 이전이 현재의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로의 안정적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구축 방안들을 이행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해나가는 과정에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공동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동맹의 대응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을 통해 한국군의 국방역량을 지속 확충해나갈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매티스 장관은 한국군의 국방개혁이 포괄적 동맹능력 향상에 기여

하길 바란다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한국군의 첨단 군사자산 획득·개발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8.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의 능력확보, 전략문서 발전 등 제반 이행과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2017년 6월 양국 정상 간 합의 이후 전작권 전환 준비에 실질적이고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정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핵심 군사능력 확보 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전작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대한민국의 공약을 강조하였다. 매티스 장관은 미국의 지속능력 제공과 함께 대한민국이 완전한 자주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보완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향후 안보상황 변화를 면밀히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의 충족 여부를 공동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9.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보장하기 위해 공동으로 발전시킨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2015년에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수정안에도 서명하고,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2013년에 작성된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의 개정안」과 「한국 합참-유엔사-한미연합사 간 관계관련약정(TOR-R)」을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현재의 연합군사령부 구조를 지속 유지하기로 하고, 미래 연합군사령부에서는 한국군 4성 장성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4성 장성이 부사령관을 맡도록 한다는 공동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2019년도에 시행하는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에 대한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연례 SCM 및 MCM 회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하여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시기를 판단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양 장관은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연합방위능력 향상 및 관련 작전개념과 군사계획, 전략문서 발전 등의 진전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11. 양 장관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보장하고 동맹의 포괄적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한국군의 우주역량 강화 및 우주 분야 동맹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올해 중국 우주정거장 톈궁 1호의 재진입 시 양국이 우주상황정보 공유를 통해 적시적이고 효과적으로 협력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공동의 우주작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양자 및 다자 연습 참여기회를 지속 모색하고, 임무 수행 보장을 위한 능력을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날로 증대되는 사이버 안보위협을 고려하여 동맹의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향후 사이버안보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 양국 사이버사령부의 조직개편에 대해 서로 정보를 공

유하기로 하였다.

12. 양 장관은 2017년 제49차 SCM 이후 한미 과학기술 분야 협력의 진전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로봇공학, 자율기술, 지향성에너지 등의 분야에서의 기술협력이 확대되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과학기술협력의 심화·확대는 한미동맹의 국방역량 및 상호운용성에 크게 기여한다고 평가하며,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혁신적인 협력사업을 전향적으로 식별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 장관은 연구개발, 방위산업 발전, 안보지원, 군수, 기술보안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연합방위능력 향상은 물론 동맹의 비교 기술우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런 차원에서 양 장관은 정례협의체들을 통해 관련 분야의 공조와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협력활동의 기획, 조정 및 실행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관련 협의체 운용 방안을 공동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14.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대해적작전, 안정화 및 재건 노력,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등을 포함하여 상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 및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경두 장관은 미국이 다양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는데 있어 글로벌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매티스 장관은 국제 사회의 ISIS 대응 노력, 아덴만 해적퇴치활동, 유엔 평화유지활동, 확산방지구상(PSI) 등을 포함하여 글로벌 안보를 위한 대한민국의 헌신과 기여를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대량살상무기 대응(CWMD)위원회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차단과 유사시 WMD 위협 완화를 위한 동맹의 연합대응능력 강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미 국방부의 협력적위협감소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앞으로도 관련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5. 양 장관은 공동의 안보도전에 기초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고위급 정책협의, 다양한 연합훈련, 정보공유 증진 등 3자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하였다.

16. 양 장관은 지난해 미8군사령부에 이어 올해 주한미군사령부 및 미2사단 본부가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함에 따라 바야흐로 '주한미군 평택시대'가 본격화된 것에 대해 주목하였다. 양측은 험프리스 기지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기지로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겠다는 한미동맹의 강력한 결의의 상징이라고 평가하였다. 매티스 장관은 험프리스 기지가 훌륭하게 조성되고 부대이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해 준 한측의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17. 양 장관은 주한미군사령부의 기지이전 및 기지반환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환경오염 및 기지반환 등과 관련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또한 시설과 구역의 원상회복 책임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관련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SOFA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관련 문제를 지속 논의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충분하고도 지속적인 훈련여건 보장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핵심 요소임에 의견을 같이하면서, 이를 위해 안전사고 예방, 훈련장 인근 거주 주민 배려조치 등 효과적인 민군관계 관리를 위한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 간의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8. 매티스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과 포괄적 안보분담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방위비분담특별조치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방위비분담특별조치협정(SMA)」의 적기 타결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 증진, 주한미군사령관의 융통성 존중, 상호존중 증진, 이행 효율성 보장 등을 통해 관련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19. 정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금번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50차 SCM과 제43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가 상호보완적 한미동맹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제51차 SCM을 2019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제5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담을 조기에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끝.

일반부록 15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개최 기념 한미 공동발표문

2018년 10월 26일

2018년 10월 31일 정경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합중국 국방장관은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를 공동으로 주최할 예정이다. SCM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한미동맹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한미 양국 정부 간 대표적인 연례 안보협의기구이다.

SCM은 북한의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등 한반도 긴장고조 상황하에서 양국 국방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국방각료회의'라는 이름으로 1968년에 설립되었다. 1971년 제4차 회의 시부터 양국 외교 대표가 동참하는 정부 차원의 연례 안보회의체로 격상되었고, 명칭도 '한미안보협의회의(SCM)'로 변경되어 올해 50회를 맞이하였다.

SCM은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SCM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1977년 제10차 SCM에서 한미 연합군사령부(이하 연합사) 창설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이듬해 창설하고, 1978년에 한미군사위원회(MCM)를 설치한 것이다. 이로써 양국 국가통수기구의 지침을 SCM, MCM, 연합사 등을 통해 구현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합방위체제가 구축되었다. 한미 연합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견고하게 통합된 연합방위체계로서 올해로 창설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MCM은 양국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최상위 군사협의기구로 지난 10월 25일 제4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SCM은 한미 양국의 미래 동맹발전을 위한 핵심 협의창구로서 강력한 한미동맹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양국은 그동안 SCM을 통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 속에서도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방위공약을 지속적으로 재확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안보를 위한 상호 협력을 촉진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SCM은 「한미동맹 비전(2006)」, 「한미 국방협력지침(2010)」, 그리고 「맞춤형 억제전략(2013)」 등의 합의문 채택을 통해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며, 한미동맹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이 되어왔다. 이러한 노력은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들을 공유하는 동맹관계를 형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SCM은 그동안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능력과 동맹의 공동 방위역량 구축에도 크게 기여해왔다. 1970년대 미국 정부의 소화기 군수공장 건립 지원과 대외군사판매 차관 제공 등은 한국군 현대화와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방위산업 협력확대 등을 통해 동맹의 전쟁지속능력을 강화하고 한국군의 방위산업 및 국방과학기술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지난 20년간 한미 양국은 SCM을 통해 우리 군의 독자적인 능력 향상과 동맹의 포괄적인 대응능력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집중하였다. 특히, SCM은 작전통제권 전환에 있어 주요 정책결정 및 이행을 위한 핵심적인 동력을 제공하였다. 1994년 정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현재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제반 조건을 구비하는 데 동맹의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SCM은 한미 양국 군의 협력 수준을 심화·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SCM은 대테러전, 유엔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지원, 대해적작전,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등 범세계적 안보위협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동대응과 양국 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함은 물론, 사이버·우주 등 새롭게 대두되는 안보 분야에서의 양자 간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SCM은 동맹의 포괄적 안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과학기술, 기술보호, 방위산업 등에서도 미래지향적 협력을 증진해나가고 있다.

이처럼 SCM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한반도의 안보를 보장해온 대체불가능한 동맹 협의체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제까지 한미동맹은 항상 공동의 안보도전에 슬기롭게 대처해왔으며, SCM이 그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지금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세계 안보정세는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어 SCM과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특히, SCM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달성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지속 모색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SCM은 현재의 한미동맹을 보다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데에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 SCM은 향후에도 한미동맹을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양국의 공동 목표에 맞도록 설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최고의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일반부록 16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2018년 10월 31일

(목적) 2017년 양국정상이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의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한미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합방위지침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다.

(전문) 한미 국방부는 1953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후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들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 인식을 같이한다.

한미 국방부는 이러한 한미동맹의 기여가 향후에도 지속되어,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방지하고,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며,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임을 확인한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한미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된 이후에도 강화된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합방위지침을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공약의 상징으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이행한다.

대한민국에 대한 외부의 침략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 방어하기 위해 한미 연합군사령부와 예하 연합구성군사령부를 편성한다.

연합군사령부는 독립적인 상설기구로 운용되며, 양국 국가통수기구의 공동지침을 받는 군사협의기구로부터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받는다.

대한민국의 국가통수기구는 한국군 4성 장성을 연합군사령관으로 임명하며, 미합중국의 국가통수기구는 미군 4성 장성을 연합군 부사령관으로 임명한다.

한미 국방부는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유엔군사령부를 지속 유지하고 지원하며, 한국 합참, 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간의 상호관계를 발전시킨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 발전시키고, 미합중국 국방부는 대한민국

의 방위를 위한 보완 및 지속능력을 계속 제공한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외부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책임을 확대해 나가며, 미합중국 국방부는 확장억제를 지속 제공한다.

한미 국방부는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정기적인 협의를 진행한다.

한미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연합방위체제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노력한다.

일반부록 17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규모

지속적 지원 내역 : 약 3.4조 원

단위 : 억 원

구 분	분 류	세 분	항 목	2015년
직접 지원	국방 예산	방위비분담금	인건비(3,490), 군사건설(4,148), 군수지원(1,682)	9,320
		기 타	미 통신선·연합 C4I체계 사용	154
			카투사 병력지원(기본급, 피복비 등 운영 지원비)	98
			기지 주변 정비 비용(Magnum 탄약고 정비)	82
			부동산 지원	82
	국방예산 외 지원		기지 주변 정비 비용(주변 도로사업, 평택 지원)	14,542
			공무집행 피해배상	1
	합 계			**24,279**
간접 지원	기회 비용		무상 공여토지 임대료 평가	7,105
			KATUSA 기회 비용	936
			훈련장 사용지원	236
	면제 및 감면 비용		관세, 내국세, 지방세, 석유 수입 및 판매 관련 세금 면제	1,135
			상하수도료, 전기료, 가스사용료, 전화통신료 감면	91
			도로, 항만, 공항, 철도 이용료 면제	86
	합 계			**9,589**
총 계				**33,868**

한시적 비용 : 약 2조 원

단위 : 억 원

구 분	분 류	항 목	2015년
직접 지원	국방예산	기지 이전 특별협정(YRP·LPP)	7,169
		기지 이전사업 관련 비용(반환기지 토양오염 정화)	84
	국방예산 외 지원	기지 이전사업 관련 비용(반환 공여 구역 토지 매입)	13,442
총 계			**20,695**

항목별 설명

구 분	내 용	관련 근거
미 통신선·연합 C4I체계 사용비	미 통신선 사용료(전체 사용액의 35%) 및 연합 C4I체계 지원비	한미연합사 통신비용부담합의서, 비용분담 및 정보상호운용성 체계에 관한 이행협정서
카투사 병력지원 (기본급, 피복비 등 운영 지원비)	카투사 병력에 대한 기본급·피복비 및 한국군지원단 운영비 지원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유엔군사령관 간 구두 협약
Magnum 탄약고 정비	주한미군 Magnum 탄약고 주변 안전구역 토지 매입 및 주민 이주사업 추진 비용	SOFA 2조·5조, SOFA 양해사항 2조·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 78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부동산 지원	시설부지·사용부지의 매입비, 사용료, 보상비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SOFA 2조·5조, SOFA 양해사항 2조·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8조 및 동법 시행령 40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2조
주변 도로사업, 평택지원	평택기지 주변 도로 정비사업 및 평택 지역 지원 비용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SOFA 2조·3조·5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무집행 피해배상	주한미군의 군사훈련·공무집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나 인신 상해에 대한 배상비 지원	SOFA 23조
무상공여토지 임대료 평가	주한미군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공여토지의 임대료 기회비용 * 산출방식 : 공시지가 평균금액에 법령상 요율을 적용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SOFA 2조
카투사 기회비용	카투사 병력이 미군이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미군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 * 산출방식 : (계급별 미군 연 기본급+외국어 능력 수당)-계급별 한국군 연 급여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유엔군사령관 간 구두 협약
훈련장 사용지원	주한미군 사격훈련장 이용 지원비용 * 산출방식 : 면적×공시지가×사용일수/365×임대요율	SOFA 2조·5조, 우리 군 훈련장·사격장의 미군 이용에 관한 각종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
면제·감면비용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을 면제 또는 감면 * 산출방식 : 1999~2011년까지의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주한미군 병력수를 고려하여 추정	SOFA 6조, 10조, 14조, 16조
반환기지 토양오염정화	지자체가 오염정화를 실시하고,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른 토양오염 정화 비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12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지침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	반환된 공여구역 또는 주변지역 경제 진흥을 위해 개발에 필요한 토지 매입금 일부 지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반부록 18

국방협력협정 체결 현황[11)]

2018년 11월 기준

상대국	체결 연월	상대국	체결 연월	상대국	체결 연월	상대국	체결 연월
독일	1994. 5.	스웨덴	2009. 7.	사우디아라비아 (조약)	2013. 2.	우간다	2016. 5.
캐나다	1995. 5.	요르단 (조약)	2009. 10.	인도네시아 (조약)	2013. 10.	에콰도르	2016. 7.
이스라엘	1995. 8.	싱가포르	2009. 12.	필리핀	2013. 10.	보츠와나	2017. 1.
러시아	1996. 11.	리투아니아	2010. 2.	폴란드 (조약)	2013. 10.	피지	2017. 1.
터키	1999. 11.	인도	2010. 9.	아제르바이잔	2013. 12.	이집트	2017. 3.
몽골	1999. 12.	카자흐스탄	2010. 9.	뉴질랜드	2014. 5.	앙골라	2017. 3.
쿠웨이트	2004. 11.	베트남	2010. 10.	카타르 (조약)	2014. 11.	미얀마	2017. 9.
브라질 (조약)	2006. 3.	루마니아	2010. 10.	체코	2015. 2.	캄보디아	2018. 9.
우크라이나	2006. 9.	가봉	2011. 10.	콜롬비아	2015. 3.	브루나이	2018. 9.
UAE (조약)	2006. 11.	페루	2011. 10.	불가리아	2015. 5.	이탈리아 (조약)	2018. 10.
스페인	2006. 12.	호주	2011. 12.	투르크 메니스탄	2015. 5.		
우즈베키스탄	2008. 6.	태국	2012. 3.	파라과이	2016. 1.		
일본	2009. 4.	중국	2012. 7.	에티오피아	2016. 5.		

11) 의의 : 상호 본격적 국방협력 추진을 위한 기본합의서 성격의 문서로서, 협력 원칙·분야·방식 등 포괄적 사항 규정
내용 : 협력원칙(상호 호혜주의 등), 협력 범위(군사정보·군인사 교류, 방산, 군수 등), 행정사항(비용부담, 효력 발생 등) 등

일반부록 19

국제 군축 및 비확산 협약 및 기구

2018년 12월 기준

구 분		가입국 (발효·설립)	남·북한 가입 현황	주요 내용
유엔 관련기구	유엔 총회 제1위원회 (First Committee)	193개국 (1945. 10.)	한국 (1991. 9.) 북한 (1991. 9.)	• 유엔 총회 6개 위원회 중 하나로 군축 및 국제안보 의제 논의 • 매년 50~60여 개의 결의안 초안을 총회에 권고하며, 대부분 본회의에서 그대로 채택
	유엔 군축위원회 (UNDC : UN Disarmament Commission)	193개국 (1952. 1.)	한국 (1991. 9.) 북한 (1991. 9.)	• 군축·비확산 분야 주요 이슈 3개를 선정, 심층 검토하여 유엔 총회에 보고서 제출 • 주요 이슈에 대한 국제 사회의 합의 방향, 원칙 등을 도출해 내는 심의기구
	제네바군축회의 (CD : Conference on Disarmament)	65개국 (1984. 2.)	한국 (1996. 6.) 북한 (1996. 6.)	• 다자군축을 담당하는 유일한 국제협상기구 • 군축 관련 주요 다자조약의 대부분이 군축회의에서 교섭을 통해 탄생 • 유엔 총회의 직속기구는 아니나 유엔 정규예산으로 운영되고, 독자적으로 의제 및 의사규칙 결정 • 매년 유엔 총회에 정기보고서 제출
핵무기	핵비확산조약 (NPT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191개국 (1970. 3.)	한국 (1975. 4.) 북한 (1985. 12.) * 2003. 1. 탈퇴 선언	• 핵무기의 확산 방지 및 핵군축 실현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국제원자력기구 (IAEA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170개국 (1957. 7.)	한국 (1957. 8.) 북한 (1974. 9.) * 1994. 6. 탈퇴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기술 지원 • 핵물질의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 방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184개국 (미발효)	한국 (1999. 9.)	• 일체의 핵실험(대기권, 외기권, 수중 및 지하 포함) 금지
	핵무기금지조약 (TPNW :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69개국 (미발효)	남·북한 미가입	• 핵무기의 개발·실험·생산·제조 등을 통한 획득·보유·축적 금지 • 핵무기 사용 또는 사용 위협 금지

구 분		가입국 (발효·설립)	남·북한 가입 현황	주요 내용
미사일 및 우주	탄도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규약 (HCOC : 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	139개국 (2002. 11.)	한국 (2002. 11.)	•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정치적·자발적 성격의 행동지침 • 대량살상무기를 개발 또는 획득할 우려가 있는 국가들의 탄도미사일 개발계획 지원 금지
	유엔 외기권 평화적 이용위원회 (COPUOS :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87개국 (1959. 12.)	한국 (1994. 9.)	• 외기권의 탐사 및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술적·법률적 문제의 기본원칙 제시
생물화학 무기	생물무기금지협약 (BWC :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182개국 (1975. 3.)	한국 (1987. 6.) 북한 (1987. 3.)	• 생물무기(작용제 및 독소)의 개발, 생산, 비축 전면 금지
	화학무기금지협약 (CWC : Chemical Weapons Convention)	193개국 (1997. 4.)	한국 (1997. 4.)	• 화학무기 개발, 생산, 비축, 사용, 이전을 전면 금지 • 가입 후 10년 내 모든 화학무기·시설 완전 폐기 *불가피한 경우 5년까지 연장 가능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193개국 (1997. 4.)	한국 (1997. 4.)	• 화학무기금지협약 의무 이행 감시 및 사찰을 위한 집행기구
재래식 무기	무기거래조약 (ATT : Arms Trade Treaty)	99개국 (2014. 12.)	한국 (2013. 6.)	• 재래식무기의 불법 거래 및 전용을 방지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보에 기여 • 재래식무기의 국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규정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CCW :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125개국 (1983. 12.)	한국 제1의정서 (2001. 5.) (개정) 제2의정서 (2001. 5.) 제5의정서 (2008. 1.)	• 정식명칭 : 과도한 상해나 무차별한 영향을 초래하는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협약 - 제1의정서 : X-ray 탐지 불가 파편무기 사용 금지 - 제2의정서 : 지뢰, 부비트랩 등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 - 제3의정서 : 화염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 - 제4의정서 : 실명 레이저무기 사용 금지 - 제5의정서 : 전쟁잔류폭발물 규제
	유엔 재래식무기 등록제도 (UNRCA : United Nations Register of Conventional Arms)	193개국 (1991. 12.)	한국 (1993. 3.)	• 재래식무기 수출입 실적 및 보유 현황 등을 유엔에 등록 • 재래식무기 이전 정보 공유 및 군비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신뢰 증진
	대인지뢰금지협약 (Ottawa Convention)	164개국 (1999. 3.)	남·북한 미가입	• 대인지뢰의 생산, 사용, 비축, 수출 전면 금지 • 대인지뢰 폐기 (비축분 4년 이내, 매설분 10년 이내) *불가피한 경우 10년까지 연장 가능

구 분		가입국 (발효·설립)	남·북한 가입 현황	주요 내용
재래식무기	확산탄금지협약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105개국 (2010. 8.)	남·북한 미가입	• 모든 확산탄의 생산, 사용, 비축, 이전 전면 금지 *현재 비축 확산탄은 8년 내 폐기
다자수출통제체제	쟁거위원회 (ZC : Zangger Committee)	39개국 (1974. 8.)	한국 (1995. 10.)	• NPT 미가입 핵 비보유국에 대한 핵 관련 물자 수출 시 IAEA 안전조치를 조건으로 수출 • NPT 회원국만 가입 가능
	핵공급국그룹 (NSG : Nuclear Suppliers Group)	48개국 (1978. 1.)	한국 (1996. 10.)	• 핵물질, 기술, 장비,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 NPT 회원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핵 비보유국에 대해 수출 통제
	호주그룹 (AG : Australia Group)	43개국 (1985. 6.)	한국 (1996. 10.)	• 화학·생물무기 관련 물질,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등이 우려국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출통제체제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35개국 (1987. 4.)	한국 (2001. 3.)	•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로켓, 무인비행체, 관련 장비·기술의 확산을 자발적으로 통제하는 체제
	바세나르체제 (WA : Wassenaar Arrangement)	42개국 (1996. 7.)	한국 (1996. 7.)	•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에 관한 수출통제 체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	확산방지구상 (PSI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s)	105개국 (2003. 6.)	한국 (2009. 5.)	• 불량국가 및 테러집단에 의한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및 관련 물자의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 활동

일반부록 20

우리 군의 해외파병 현황

총 12개국 1,095명

2018년 11월 30일 기준

구 분				현재 인원 (명)	지 역	최초 파병 시기	교대 주기
UN PKO	부대 단위	레바논 동명부대		331	티르	2007. 7.	8개월
		남수단 한빛부대		280	보르	2013. 3.	
	개인 단위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UNMOGIP)		7	스리나가	1994. 11.	1년
		남수단 임무단(UNMISS)		7	주바	2011. 7.	
		수단 다푸르 임무단(UNAMID)		2	다푸르	2009. 6.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4	나쿠라	2007. 1.	
		서부 사하라 선거감시단(MINURSO)		4	라윤	2009. 7.	
	소 계			**635**			
다국적군 평화활동	부대 단위	청해부대		302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2009. 3.	6개월
	개인 단위	바레인 연합해군사령부	참모장교	4	마나마	2008. 1.	1년
		지부티 연합합동 기동부대 (CJTF-HOA)	협조장교	2	지부티	2003. 12.	
		미국 중부사령부	협조단	2	플로리다	2001. 11.	
		미국 아프리카사령부	협조장교	1	슈투트가르트	2016. 3.	
	소 계			**311**			
국방협력	부대 단위	UAE 아크부대		149	알 아인	2011. 1.	8개월
	소 계			**149**			
총 계				**1,095**			

일반부록 21

병사 봉급 변화 추이

단위 : 원

연 도	병 장	상 병	일 병	이 병
1970년	900	800	700	600
1971년	1,030	920	800	690
1972년	1,200	1,050	900	800
1973년	동 결			
1974년	1,560	1,370	1,170	1,040
1975년	동 결			
1976년	2,260	1,990	1,700	1,510
1977년	2,890	2,540	2,170	1,930
1978년	3,460	3,050	2,600	2,320
1979년	3,800	3,300	2,900	2,600
1980년	3,900	3,400	3,000	2,700
1981년	동 결			
1982년	4,200	3,700	3,300	3,000
1983년	4,500	3,900	3,500	3,200
1984년	동 결			
1985년	4,600	4,000	3,600	3,300
1986년	4,900	4,300	3,900	3,500
1987년	5,100	4,500	4,000	3,600
1988년	7,500	6,500	6,000	5,500
1989년	8,300	7,000	6,500	6,000
1990년	9,400	8,200	7,300	6,600
1991년	10,000	9,000	8,000	7,200
1992년	10,900	9,800	8,700	7,800
1993년	11,300	10,100	9,000	8,100
1994년	11,700	10,400	9,300	8,400
1995년	12,100	10,700	9,600	8,700
1996년	12,700	11,200	10,100	9,100
1997년	13,300	11,800	10,600	9,600
1998년	동 결			
1999년	동 결			
2000년	13,700	12,200	10,900	9,900
2001년	19,600	17,700	16,000	14,800
2002년	21,900	19,800	17,900	16,500
2003년	23,100	20,900	18,900	17,400
2004년	34,000	30,700	27,800	25,600
2005년	44,200	39,900	36,100	33,300
2006년	72,000	65,000	58,800	54,300
2007년	88,600	80,000	72,300	66,800
2008년	97,500	88,000	79,500	73,500
2009년	동 결			
2010년	동 결			
2011년	103,800	93,700	84,700	78,300
2012년	108,000	97,500	88,200	81,500
2013년	129,600	117,000	105,800	97,800
2014년	149,000	134,600	121,700	112,500
2015년	171,400	154,800	140,000	129,400
2016년	197,000	178,000	161,000	148,800
2017년	216,000	195,000	176,400	163,000
2018년	405,700	366,200	331,300	306,100

* 출처 : – 1983~2018년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
– 1970~1982년 군인보수법시행령(대통령령) 별표 2 병의 봉급표

일반부록 22

현역병 복무기간 변천

연 도	복무 기간(개월)			조정 사유
	육군·해병	해 군	공 군	
1952년 이전	전역 제도 없음			6·25 전쟁 발발로 「병역법」의 정상적 시행 불가
1953년	36	36	36	6·25 전쟁 후 장기복무자 전역 조치
1959년	33	36	36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1962년	30	36	36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1968년	36	39	39	1·21 사태로 복무기간 연장
1977년	33	39	39	잉여자원 해소 및 산업기술 인력 지원
1979년	33	35	35	해·공군병 획득난 해소
1984년	30	35	35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1990년	30	32	35	해군병 획득난 해소
1993년	26	30	30	방위병제도 폐지로 인한 잉여자원 해소
1994년	26	28	30	해군병 획득난 해소
2003년	24	26	28	병역부담 완화
2004년	24	26	27	공군병 획득난 해소
2008년	24→18	26→20	27→21	병역부담 완화를 위해 6개월 단축(2014년까지 단계적 추진)
2011년	21	23	24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기존 6개월 단축을 3개월 단축으로 조정
2018년	21→18	23→20	24→22	병력중심의 군을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하고,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국방개혁 2.0」)

일반부록 23

국방기구도

국방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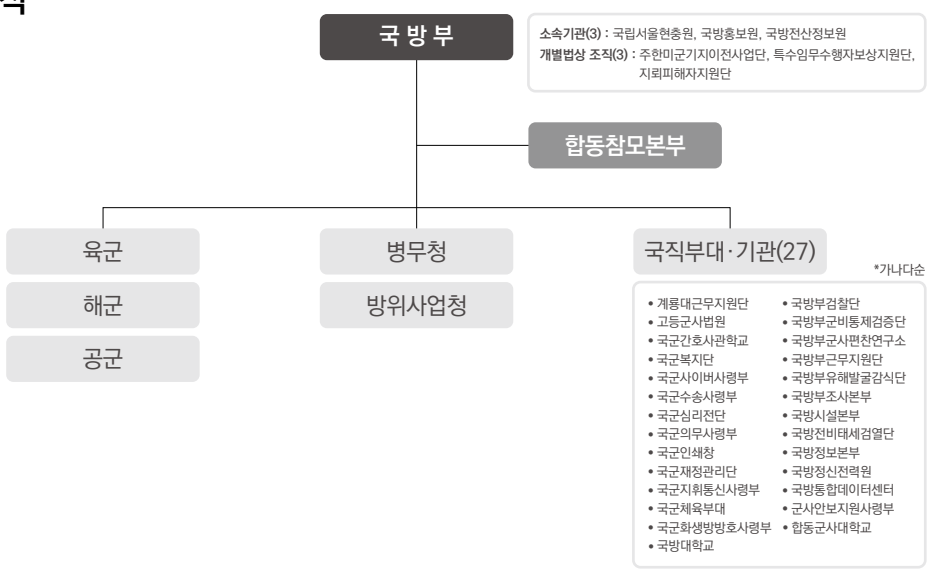

국방부 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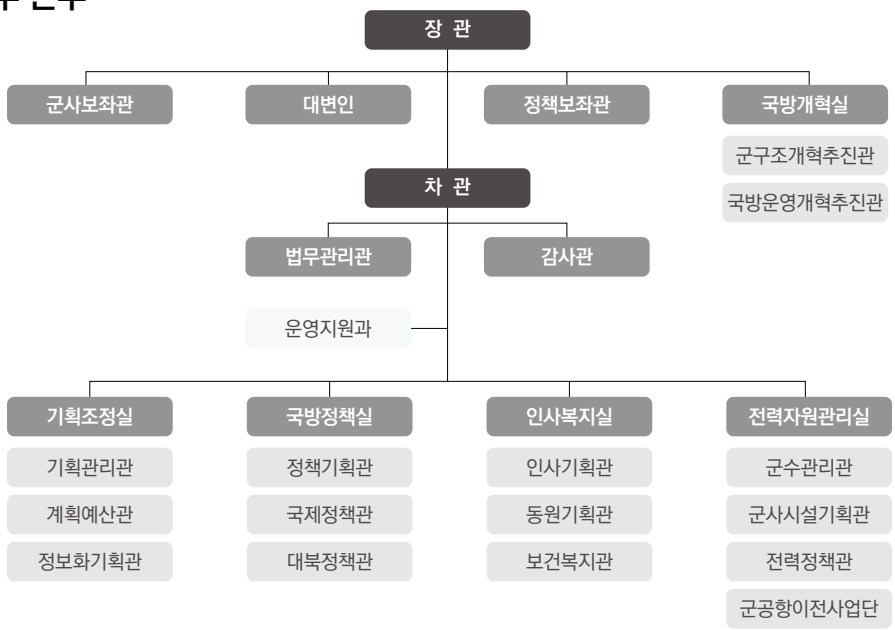

소속기관 및 개별법상 조직의 임무 및 기능

구 분		임무 및 기능
소속기관	국립서울현충원	• 안장·위패봉안·추모식 등 위령 행사 실시 • 참배 행사 계획 수립 및 시행 • 현충선양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립서울현충원 홍보 • 국립서울현충원 시설·묘역·산림의 관리 및 운영
	국방홍보원	• 국방일보, 국방TV 및 국방FM 등을 통한 군 홍보 및 장병 교육 • 국방뉴스, 시사 보도물 제작 및 사이버 홍보 • 국방 관련 행사 사진 촬영 및 기록 관리 등
	국방전산정보원	• 국방자원관리 정보체계 개발 및 유지보수 • 국방부 및 소속기관의 통신망, 전산장비 등의 획득·운영 • 신 정보기술의 연구, 습득, 전파 및 관리 •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별법상 조직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집행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관리·운용의 지원 • 그 밖에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추진 등을 위한 업무 등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준비 및 지원 • 보상금 등의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신청인에 대한 자료 확인 및 조사 • 법에 따른 보상과 관련한 소송 및 민원 대응 등
	지뢰피해자 지원단	•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장해등급 판정 실무위원회 심의 준비 및 지원 • 위로금 등의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신청인에 대한 자료 확인 및 조사 • 그 밖에 지뢰 피해자 지원 관련 업무 및 민원 대응 등

공공기관의 임무 및 기능

구 분		임무 및 기능
공공기관	한국국방연구원	• 안보환경 및 국방기본정책에 관한 연구와 대안의 개발 •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무기체계의 선정 및 획득정책에 관한 연구 • 국방인력·자원관리 및 국방과학기술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 국방정보화 정책연구, 국방정보화 관련 사업의 개발지원 및 기술자문 • 국방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 분석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
	전쟁기념사업회	• 전쟁기념관 및 기념탑 운영 • 전쟁 및 군사유물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연구 • 전쟁사 및 군사유물 연구, 호국인물 발굴 및 현양, 기타 학예활동 •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와 교육 및 각종 관련 간행물의 작성·배부 등
	국방전직교육원	• 전역 예정 군인 전직 관련 교육 및 취업역량 제고 • 전역 예정 군인 취업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 촉진 • 전역 예정 군인 취업희망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통계 유지·분석 • 전역 예정 군인 전직지원 관련 정책 및 제도발전 연구 등

일반부록 24

국방부 소관 법령 정비 현황

법령 정비 현황(2016. 12. 1. ~ 2018. 11. 30.)

합 계	법 률	대통령령	부 령
113	24	46	43

법률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6·25 전사자 유해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4416호 (2016. 12. 20.)	•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개정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4418호 (2016. 12. 20.)	•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및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및 사업 현황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제14419호 (2016. 12. 20.)	•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제14420호 (2016. 12. 20.)	•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군무원의 직종을 일반군무원으로 통합하고 특수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근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군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 제14421호 (2016. 12. 20.)	•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 등의 의무복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제14422호 (2016. 12. 20.)	• 군수품의 품질 보장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등을 대상으로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 제14609호 (2017. 3. 21.)	• 군인의 신분을 가지는 준사관후보생을 이 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군 가산복무를 전제로 지급하는 지원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군 장학금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용어를 변경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제14610호 (2017. 3. 21.)	•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지체상금을 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제14612호 (2017. 3. 22.)	•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인 2018년까지를 2025년까지로 7년 연장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6·25 전사자 유해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5045호 (2017. 11. 28.)	• 2010년 2월 4일 「문화재보호법」이 전부 개정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 제·개정법률에 맞추어서 관련 조항을 개정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제15046호 (2017. 11. 28.)	•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 확충을 위해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5047호 (2017. 11. 28.)	• 군 병원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례식장의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 제15048호 (2017. 11. 28.)	• 군인공제회가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와 고유 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경영공시 사항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외부전문가의 회계감사 결과를 포함시키도록 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제15049호 (2017. 11. 28.)	• 무주택세대주로 되어 있는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의 요건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제15050호 (2017. 11. 28.)	• 민간 병원을 이용하는 공상군인에게 요양 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공상군인에 대한 최소한의 건강보험급여를 보장하는 한편, 재심 등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연금 급여 제한 사유가 소멸되면 그동안 감액되어 지급하지 아니한 연금 급여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제15051호 (2017. 11. 28.)	• 재정 상황이 열악한 연구기관 및 일반업체에 대해서도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방위산업 육성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정원을 23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면서 국회 상임위 추천위원을 3명에서 4명으로, 방위사업청장 추천 민간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각각 확대함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 제15052호 (2017. 11. 28.)	•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 시 벌칙 조항 강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제15165호 (2017. 12. 12.)	• 「군사법원법」의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하고, '진술서' 및 그에 준하는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은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경우 반대신문권이 보장됨을 명확히 규정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5166호 (2017. 12. 12.)	• 징벌위원회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의 공무상 비밀의 누설죄와 뇌물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 제15345호 (2018. 1. 16.)	•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가 중퇴한 경우에도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 중퇴자와 동일하게 단기복무 부사관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군인도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제15346호 (2018. 1. 16.)	•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에게 「군인연금법」에 따른 '전사' 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제15434호 (2018. 3. 13.)	•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사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제15435호 (2018. 3. 13.)	• 「국군조직법」 제정 이후 군 복무 중 발생한 각종 사망사고 중 그 사망원인에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그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과 인권증진에 폭넓게 기여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5497호 (2018. 3. 20.)	• 국방부장관이 군복 또는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4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

대통령령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7655호 (2016. 12. 5.)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일부 통제보호구역의 지정 범위를 완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7708호 (2016. 12. 30.)	• 지뢰피해자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기준 및 위로금의 조정·지급 기준 마련
군 장학생 규정	일부개정 제27813호 (2017. 1. 31.)	• 군 장학생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 장학생으로 선발되기 전의 수학기간을 포함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군 장학생의 휴학 사유 및 기간을 확대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제27957호 (2017. 3. 27.)	• 검찰관 및 군사법경찰관리 등이 「군사법원법」 등 법령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감정보, 고유 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8017호 (2017. 5. 8.)	• 전역 예정 군인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여건 마련과 성실한 군 복무 유도를 위하여, 전직 지원교육 대상을 의무복무기간 이상 복무한 장교·준사관·부사관에서 복무 중인 장교·준사관·부사관 전체로 확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8116호 (2017. 6. 20.)	• 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을 확대하고,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전공사상에 관하여 재심사를 한 경우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유족과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다시 한 차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8117호 (2017. 6. 20.)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군수품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 대상 사업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함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8149호 (2017. 6. 27.)	• 감항인증 기술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방산진흥국장으로 변경하고, 감항인증 전문기관인 정부출연기관이 군용항공기의 부품 등을 제작·개조·개량하여 장착한 군용항공기에 대한 방위사업청장의 감항인증 권한을 공군참모총장에게 위탁하도록 함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28174호 (2017. 6. 30.)	•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를 축소하고, 심판관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3명의 영관급 이상 군판사로 군사법원을 구성하도록 하며, 군판사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8201호 (2017. 7. 24.)	• 휴직 중인 군인이 공무 목적이 아니더라도 휴직 목적에 맞는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지휘관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교육 또는 전직 지원교육 중인 군인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해당 연도 연가 일수 중 위탁 교육 또는 전직 지원교육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기간으로 정함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8266호 (2017. 9. 5.)	• 해군 정보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군 기본병과에 정보과를 신설하고, 해병대 기계화부대의 운용 효율화를 위하여 해병대 기본병과에 기갑과를 신설하며, 효율적인 군수지원 업무를 위하여 해병대 기본병과에 보급수송과와 병기과를 통합하여 군수과를 신설함
군 표창 규정	일부개정 제28297호 (2017. 9. 19.)	• 표창권자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 또는 부서의 장까지 확대하여 일부 부서의 장도 표창장·상장 및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표창의 종류에서 정근상을 제외함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 제28298호 (2017. 9. 19.)	• 라오스, 이란 및 요르단과의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에 두는 무관의 정원을 72명에서 75명으로 3명(영관급 장교 3명) 증원함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8339호 (2017. 9. 22.)	•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지체상금을 면제하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8341호 (2017. 9. 27.)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군인 외에 남성 군인도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녀가 있는 군인에게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군인복제령	일부개정 제28346호 (2017. 9. 29.)	• 육군과 공군의 경우에는 예장의 착용빈도가 많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예복과 예모의 제식을 정복과 정모의 제식으로 통합하고 정복에 견장을 부착하여 예복으로 활용
군 장학생 규정	일부개정 제28423호 (2017. 11. 14.)	• 군 장학금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각 군 참모총장에게만 위임된 군 가산복무 지원금 관련 업무를 해병대사령관에게도 위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 규정의 제목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으로 변경
육군본부 직제	일부개정 제28424호 (2017. 11. 14.)	•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의 정책업무를 이관하여 정책실장을 신설하고, 정보작전지원참모부를 정보작전참모부로 변경
해군본부 직제	일부개정 제28425호 (2017. 11. 14.)	•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의 정책업무를 이관하여 정책실장을 신설하고, 정보작전지원참모부를 정보작전참모부로 변경
공군본부 직제	일부개정 제28426호 (2017. 11. 14.)	•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의 정책업무를 이관하여 정책실장을 신설하고, 정보작전지원참모부를 정보작전참모부로 변경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 제28427호 (2017. 11. 14.)	• 해병대사령부의 특별참모부로 의무실장을 신설하고, 의무실장은 보건의료 활동 등 의무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해병대사령관을 보좌하도록 함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 제28428호 (2017. 11. 14.)	• 합동·연합작전의 개념에 관한 발전업무를 합동참모본부로 이관하기 위하여 이를 합동군사대학교 임무에서 삭제하고, 합동전투발전부를 폐지하고 합동참모대학에 통합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일부개정 제28429호 (2017. 11. 14.)	• 「군인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육군 기본병과 중 경리과가 재정과로, 부관과가 인사행정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 등을 반영
육군기계화학교령	일부개정 제28430호 (2017. 11. 14.)	• 일부 참모부서의 명칭을 명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부서와 부대의 설치에 관하여 융통성 있는 운용이 가능하도록 함
육군공병학교령	일부개정 제28431호 (2017. 11. 14.)	• 육군공병학교의 교장 직무 대행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참모부서의 명칭을 명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부서와 부대의 설치에 관하여 융통성 있는 운용이 가능하도록 함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8475호 (2017. 12. 19.)	• 기능군무원을 삭제하고 별정군무원 및 계약군무원을 각각 일반군무원 중 전문군무경력관 및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일반군무원의 공무 외 목적의 국외여행을 승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 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정 제28476호 (2017. 12. 19.)	• 종전의 기능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에 대한 전직 임용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군무원 구분체계 변경에 따른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8581호 (2018. 1. 16.)	•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국방부 소속 장성급 장교를 위원으로 추가
육군종합군수학교령	일부개정 제28598호 (2018. 1. 23.)	• 육군종합군수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해군 장병 또는 공군 장병 외에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군수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직원을 포함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8652호 (2018. 2. 13.)	•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등을 위하여 공상자 분류를 세분화하고 순직자 분류기준을 개선하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50명 이내에서 80명 이내로 확대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8684호 (2018. 2. 27.)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공무상요양비 심사 및 지급 업무의 범위를 조정하고, 미지급 급여에 가산하여 지급할 이자 계산 방식을 정함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제정 제28704호 (2018. 3. 20.)	• 육군 동원전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동원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8882호 (2018. 5. 15.)	• 군 장례식장에는 사무실, 직원 휴게실 등 장례식장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직원을 위한 편의시설을 별도로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8904호 (2018. 5. 28.)	• 전력소요서안에 관하여 합동참모회의의 심의 전에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국방기술품질원의 사업 수행 범위를 명확히 함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제29035호 (2018. 7. 10.)	• 제2연평해전의 전사자 유족에게 당시 지급된 보상금과 현행 「군인연금법」상 전사자 기준에 상응하는 금액과의 차액을 보상금으로 추가 지급하기 위하여,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결정 통보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일부개정 제29047호 (2018. 7. 17.)	•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소장의 직급을 장성급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에서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변경
국난극복기장령	폐지 제29091호 (2018.8.14.)	• 1979년 10월 26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의 기간 중 국가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등에게 국난극복기장을 수여하도록 하였으나, 수여 대상자에 대한 수여행위가 과거에 종료되어 사문화된 규정이므로 폐지함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 제29113호 (2018. 8. 21.)	•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첩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직할부대로 설치한 국군기무사령부를 군 조직 개혁의 일환으로 폐지함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 제29114호 (2018. 8. 21.)	•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방부 직할부대로 설치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조직, 운영 및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육군학생군사학교령	일부개정 제29119호 (2018. 8. 28.)	• 준사관후보생에 대한 입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군사교육요원이 소속된 학교의 장의 위탁에 의하여 실시하던 군사교육요원의 교육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제29143호 (2018. 9. 11.)	•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제29144호 (2018. 9. 11.)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위수령	폐지 제29164호 (2018. 9. 18.)	• 위수령은 육군 군대가 주둔하는 지구의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른 병력 출동 등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폐지함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 제29225호 (2018. 10. 16.)	• 해외에 파견되어 군사활동에 참가한 군인 및 군무원의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해외파견근무수당을 10% 인상하고, 기능직 군무원이 일반직 군무원으로 통합된 내용을 반영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9257호 (2018. 10. 26.)	•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 방산물자로 지정된 물자를 최초로 양산하게 하는 계약에 대해서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할 지체상금의 한도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9260호 (2018. 10. 30.)	•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군인이 10일의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군인의 복무 제도를 개선함

부령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11호 (2016. 12. 14.)	• 연평해전 참전 등 전투경력과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명예로운 경력을 군 경력 사항에 포함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 제912호 (2016. 12. 14.)	• 학군사관후보생과 학사예비장교 후보생에게 각 군에서 실시하는 전형의 평가 성적에 따라 군 장려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던 것을 균등지급하는 것으로 개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15호 (2016. 12. 27.)	• 국방부 본부 인력 5명 및 국방홍보원 인력 1명 감축 반영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16호 (2017. 1. 31.)	• 전력자원관리실장의 보좌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던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을 2020년 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서 전력자원관리실에 두는 보조기관인 군공항이전사업단으로 개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19호 (2017. 2. 28.)	• 국방민원상담센터를 총액인건비제팀으로 신설하며, 전력관리실장 밑에 군수품수명주기관리과를 신설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20호 (2017. 3. 27.)	•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병 또는 예비역 병이 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전형을 거쳐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 제921호 (2017. 3. 27.)	• 검찰관 및 군검찰부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22호 (2017. 4. 26.)	• 유족지원금 수급권 상실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함
군인 등의 특수근무 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923호 (2017. 4. 27.)	•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에 잠수의무요원을 추가하고,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군인·군무원이 특수임무 수행을 위하여 야외출동을 하는 경우 1인당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에 각 군의 폭발물처리(EOD)반에 근무하는 군인·군무원을 포함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24호 (2017. 5. 2.)	• 국방 사이버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이버정책담당관에서 사이버대응기술팀을 분리·신설
방위사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 제925호 (2017. 5. 4.)	• 정부와 함정을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한 조선업체가 정부에 함정을 담보로 제공하는 약정을 하고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보증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협력업체의 지급보증서 등에 명시된 보증금액만큼 조선업체의 지급보증서 등의 제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유예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26호 (2017. 6. 8.)	•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시험위원 및 시험관리관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27호 (2017. 6. 19.)	• 재외공관에 두는 무관의 임무로서 방위산업물자의 수입에 관한 지원을 추가하는 등 주재무관의 임무를 국방외교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조정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28호 (2017. 6. 21.)	• 방위사업과 관련된 계약체결 등을 할 때 관계 공무원에게 10억 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주기로 약속하거나 준 경우 5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30호 (2017. 7. 24.)	•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의 존속기한을 2017년 7월 25일에서 2018년 7월 25일로 연장하는 내용 반영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징수에 관한 규칙 등 5개 부령	일괄개정 제931호 (2017. 8. 1.)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 제933호 (2017. 8. 16.)	• 예비군부대 지휘관 직위에 응시할 수 있는 병과에 육군 군수과를 추가하고, 동원보충대대 정작과장을 제외한 예비전력관리기구 직위에 응시할 수 있는 병과를 각 군의 기본병과에 속하는 모든 병과로 확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35호 (2017. 9. 22.)	• 방위산업체 등과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하도급자의 대표와 임원이 제출하는 청렴서약서의 서식을 정함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38호 (2017. 10. 18.)	• 군인의 인사기록을 전자적 처리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 작성·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준사관 모집 시 우수인력 획득을 위하여 담당할 기술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요구하던 제한 사항을 삭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939호 (2017. 10. 31.)	• 방위산업 기술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체가 외부망과 방산 업무망 분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분리시스템의 구축 비용을 간접경비에 계산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 제940호 (2017. 11. 16.)	• 예비군 업무 공백 방지 및 우수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을 위하여 현재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 재직 중인 사람은 미리 퇴직하여야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41호 (2017. 11. 21.)	•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창조기획담당관 및 민정협력담당관을 각각 기획총괄혁신담당관 및 대외협력담당관으로 개편하고, 법무관리관 밑에 두는 보좌 기관과 국방정책실 및 전력자원관리실에 두는 보조 기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
의무·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942호 (2017. 11. 28.)	• 의무·수의 장교 선발 방법을 개선하고, 선발대상자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944호 (2018. 1. 2.)	•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이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또는 학위과정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에게 추천받도록 함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46호 (2018. 1. 2.)	•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밑에 두는 국방교육정책관을 대북정책관으로 개편하면서 국방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국방정책실장이 분장하던 국방교육에 관한 사무 중 일부를 인사복지실 소관으로 변경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 제947호 (2018. 1. 22.)	• 군 장학금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인용하는 규정을 정비
군 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48호 (2018. 1. 22.)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의 작성 및 승인 시기를 변경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 제950호 (2018. 2. 1.)	• 신체등급의 판정 기준인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세분화하고 명확화하며,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 기준을 개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51호 (2018. 2. 7.)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에 설치한 환경팀을 국방환경협력팀으로 개편하면서 그 존속기한을 2018년 2월 7일까지에서 2021년 2월 7일까지로 3년 연장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52호 (2018. 2. 19.)	•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상군인이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공무상 요양 기간연장 승인 신청서를 부대장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54호 (2018. 2. 23.)	• 주요 전투장비의 정비 기간 동안 그 전투장비를 대체하기 위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정비대충장비의 요건 중 전시에 동원할 수 없는 장비일 것을 삭제하여 군수품 관리의 효율성을 높임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55호 (2018. 2. 26.)	• 부사관의 군사 전문성 향상 및 자기개발을 위하여 직무 관련 학위를 취득하거나 특수지 근무경력 등이 있는 사람에게 장기복무 지원 및 진급 대상자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자격의 종목에 폭발물처리사와 국방사업관리사를 신설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56호 (2018. 2. 27.)	• 군무원의 직종체계를 통합·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무원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능군무원을 삭제하는 한편, 일반군무원을 채용할 때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채용 응시 구비서류 중에서 여권용 사진을 삭제함
군 표창 규칙	일부개정 제957호 (2018. 3. 8.)	•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부대·부서의 장의 범위를 육군·해군·공군 및 해병대의 중대급 이상 부대의 장 등으로 명확히 하고, 정근상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공적상 표창 비율을 정한 내용을 삭제함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60호 (2018. 3. 30.)	•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에서 총정원의 5%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함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61호 (2018. 5. 25.)	•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 기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를 변경함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 제964호 (2018. 6. 25.)	• 계약상대자가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군수품 획득에 관한 계약과 관계없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 중에도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선업체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지급보증서 등의 제출 유예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65호 (2018. 7. 4.)	• 재외공관에 두는 주재무관 중 무관보의 계급 기준을 통일하고, 수석무관이 다른 주재무관의 임무 수행에 대하여 지휘·감독 권한을 갖는 것을 명확히 함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66호 (2018. 7. 25.)	•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의 명칭을 국방개혁실로 변경하여 국방개혁을 총괄하는 기구로서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그 존속기간을 연장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 제967호 (2018. 8. 24.)	• 현역에서 7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 또는 퇴역 부사관도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일반군무원 7급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원서의 구비서류 중 정보화자격증 사본을 삭제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을 신설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 제968호 (2018. 9. 17.)	•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 기준인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세분화하고 명확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69호 (2018. 9. 20.)	• 군인에 대한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하기 위하여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청렴의무 위반, 성폭력·성희롱 및 음주운전 등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세분화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971호 (2018. 10. 8.)	• 중위 이하 잠수함정 승무원의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공군·해군 고정익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수당 및 유급지원병의 장려수당을 인상하고, 전투기 조종사가 특수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출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항공수당 가산금을 신설

일반부록 25

국회 국방위원회 구성 및 주요 활동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2급 김남곤	1급 김부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 규 백(61년생, 서울 동대문구갑)
3선(18·19·20대)
성균관대 및 同 무역대학원 수료, 노무현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 민주당 조직위원장, 국방위 간사, 새정치연합 원내수석, 더불어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사무총장, 국토교통위 위원

본관 421호
784-1364
788-2721
FAX)788-3685

입법조사관
3급 이옥순
4급 제 민
4급 김애선
4급 김현식
5급 이구형
5급 주경덕

2018년 12월 31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간 사

민 홍 철 (61년생, 경남 김해시갑)
재선(19·20대)
부산대 법학과, 부산대 법학석사, 육군 법무감, 고등군사법원장, (예)육군준장, (전)변호사, (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현)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현)예결위 위원

회관 554호
O)784-6491
788-2301
F)788-0195

김 병 기 (61년생, 서울 동작구갑)
초선
경희대 국민윤리학과
국정원 근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위원회 위원
예결위·정보위·국방위 위원

회관 721호
O)784-1323
788-2004
F)788-0101

김 진 표 (47년생, 경기 수원시무)
4선(17·18·19·20대)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과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민주당 최고위원,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국방위 위원

회관 744호
O)784-3808
788-2008
F)788-0109

도 종 환 (55년생, 충북 청주시흥덕구)
재선(19·20대)
충북대 국어교육과, 충남대 국문학과 박사
시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회교문위 간사, 국회교육포럼 공동대표, 국회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 공동대표

회관 333호
O)784-2538
788-2207
F)788-0185

최 재 성 (65년생, 서울 송파구을)
4선(17·18·19·20대)
동국대, 민주당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장·총무본부장, 문재인 대통령 후보 인재 영입 총괄·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본부 1실장, 예결특위·정보위 간사

회관 836호
O)784-1308
788-2574
F)788-0162

홍 영 표 (57년생, 인천 부평구을)
3선(18·19·20대)
동국대,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 원내대변인, 민주통합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정보위 위원, 국회운영위원장

본관 202호
O)784-3143
788-3460
F)788-3446

바른미래당

간 사

하 태 경 (68년생, 부산 해운대구갑)
재선(19·20대)
서울대 물리학과, 중국 지린대학교 대학원(세계경제 박사), (사)열린북한방송 대표, SK텔레콤 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환노위·예결특위 위원, 헌법개정특위 간사

회관 939호
O)784-2492
788-2917
F)788-0382

김 중 로 (50년생, 비례대표)
초선
육군사관학교(30기), 서울대 사범대 졸,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보병 제70사단장, 국민의당·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청년미래특위 위원

회관 922호
O)784-9161
788-2465
F)788-0238

자유한국당

간 사

백 승 주 (61년생, 경북 구미시갑)
초선
경북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국방부차관,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전문위원,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예결위·4차 산업혁명특위·미래일자리특위 위원

회관 830호
O)784-6731
788-2304
F)788-0199

김 성 태 (58년생, 서울 강서구을)
3선(18·19·20대)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한국노총 사무총장, 국회 예결·국토·환노위 간사,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 최순실 국조특위위원장, 국회 운영위원장, (현)국회 비정규직차별해소포럼 대표의원

회관 910호
O)784-3291
788-2309
F)788-0137

이 종 명 (59년생, 비례대표)
초선
육군사관학교(39기), 육군장교(대령 전역),
(현)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현)여가위 위원

회관 337호
O)784-2175
788-2252
F)788-0383

이 주 영 (51년생,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5선(16·17·18·19·20대)
서울법대, 영국 런던대, 서울고법, 부산지법 부장판사, 경남도 부지사, 국회예결위원장, 국회사법개혁위원장, 정책위의장(최고위원), 18대대선기획단장, 해양수산부장관, 국회개헌특위위원장

본관 307호
O)784-5282
788-2852
F)788-0323

정 종 섭 (57년생, 대구 동구갑)
초선
서울대 법대, 연세대 법학박사(헌법학),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행정자치부 장관, 서울대 법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한국헌법학회장, (현)예결특위 위원

회관 1016호
O)784-6514
788-2893
F)788-0354

황 영 철 (65년생,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군)
3선(18·19·20대)
서울대 정치학과, 홍천군의원, 강원도의원, 새누리당 대변인·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국회 안전행정위·헌법개정특위 간사, 국회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위원장,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장

회관 618호
O)784-5705
788-2921
F)788-0397

비교섭

김 종 대 (66년생, 비례대표)
초선
연세대 상경대학 경제학과,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대통령비서실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월간 〈D&D포커스〉, 〈디펜스21〉 편집장, 정의당 원내대변인·평화로운한반도 본부장, (현)예결위 위원

회관 549호
O)784-7611
788-2381
F)788-0212

서 청 원 (43년생, 경기 화성시갑)
8선(11·13·14·15·16·18·19·20대)
중앙대 정외과, 총학생회장,
조선일보 기자, 통일민주당 대변인, 정무장관, 신한국당 원내총무, 국회운영위원장, 한나라당 사무총장·대표최고위원, (현)한일의원연맹명예회장

회관 601호
O)784-9516
788-2078
F)788-0100

국회 국방위원회 주요 활동(2016. 12. 12. ~ 2018. 11. 30.)

회 기	회의 일자	주요 내용
제347회 임시국회 (2016. 12. 12. ~ 12. 31.)	2016. 12. 12.	• 국방부 현안 보고(북한 상황 평가, 군 해킹사고 조사 결과 및 후속대책) •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6. 12. 27.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
제349회 임시국회 (2017. 2. 1. ~ 3. 2.)	2017. 2. 14.	• 업무 보고(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 2016년도 국정감사 및 2015회계연도 결산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권한쟁의심판청구 결의안
	2017. 2. 23.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 •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제350회 임시국회 (2017. 3. 3. ~ 4. 1.)	2017. 3. 6.	• 긴급 현안 보고(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제350회 임시국회 폐회 중	2017. 5. 16.	• 국방부 현안 보고(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제351회 임시국회 (2017. 5. 29. ~ 6. 27.)	2017. 6. 23.	•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송영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7건 •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 등 2건
제351회 임시국회 폐회 중	2017. 6. 28.	•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송영무) 인사청문회
제352회 임시국회 (2017. 7. 4. ~ 7. 22.)	2017. 7. 4.	• 2016회계연도 결산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 7. 5.	• 긴급 현안 보고(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제352회 임시국회 폐회 중	2017. 7. 31.	• 긴급 현안 보고(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관련)
	2017. 8. 11.	•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정경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2017. 8. 14.	• 국방부 현안 보고(북한의 괌 포격 위협 문제, 사드의 전자파 측정 결과와 발사대 추가 배치 문제, 공관병 문제)
제353회 임시국회 (2017. 8. 18. ~ 8. 31.)	2017. 8. 18.	•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정경두) 인사청문회 •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정경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7. 8. 23.	• 2016회계연도 결산 •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
	2017. 8. 31.	• 국방부 현안 보고(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UFG 훈련 경과 등)

회 기	회의 일자	주요 내용
제354회 정기회 (2017. 9. 1. ~ 12. 9.)	2017. 9. 4.	• 긴급 현안 보고(북한의 제6차 핵실험 관련)
	2017. 9. 18.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0건 • 사드 배치 유보 결정 철회촉구 결의안 • 국방부 현안 보고(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2017. 9. 20.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
	2017. 10. 12. ~10. 31.	• 국정감사(국방부 등 62개 기관)
	2017. 11. 7.	• 2018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17. 11. 14.	• 2018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 •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 2건 •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촉구 결의안 등 2건
	2017. 12. 1.	•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 2건(계속) •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현안 보고(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JSA 귀순 관련 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
	2017. 12. 2.	•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한 규탄 결의안
제355회 임시국회 (2017. 12. 11. ~ 12. 29.)	2017. 12. 13.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
제356회 임시국회 (2018. 1. 30. ~ 2. 28.)	2018. 2. 1.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
	2018. 2. 6.	•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
	2018. 2. 7.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
	2018. 2. 20.	•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등 7건 • 업무 보고(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2018. 2. 28.	• 긴급 현안 보고(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방남 관련)
제362회 임시국회 (2018. 7. 13. ~ 7. 26.)	2018. 7. 24.	• 업무 보고 및 현안 보고(국방부 소관)
	2018. 7. 25.	• 업무 보고 및 현안 보고(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제363회 임시국회 (2018. 8. 16. ~ 8. 31.)	2018. 8. 21.	• 2017회계연도 결산 •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17년 국정감사 및 2016회계연도 결산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
	2018. 8. 24.	• 2017회계연도 결산(계속) •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등 73건 • 육·해·공·해병대 축구단 부활에 관한 청원 • 현안보고(「국방개혁 2.0」, 국군기무사 개혁,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추락사고 경과 등 관련)

회 기	회의 일자	주요 내용
제364회 정기회 (2018. 9. 1. ~ 12. 9.)	2018. 9. 17.	•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정경두) 인사청문회
	2018. 9. 19.	•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정경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8. 10. 5.	• 합동참모의장후보자(박한기) 인사청문회
	2018. 10. 10.	• 합동참모의장후보자(박한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8. 10. 10. ~ 10. 29.	• 국정감사(국방부 등 66개 기관)
	2018. 11. 8.	• 2019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18. 11. 14.	• 2019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2018. 11. 26.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4건 •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 2건 • 군 소음 관련법 제정에 관한 청원
	2018. 11. 30.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 •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 2건

찾아보기

ㄱ

감염병 8, 9, 10, 31, 32, 180
개인전투체계 91, 112, 118
거부적 억제 53
고농축 우라늄 25
공동육아나눔터 175
공수/특수작전훈련 77
과학화 경계시스템 47
과학화 전투훈련 72, 74
국가군사전략 11
국가비전 30, 34
국가안보목표 30, 34
국가안보전략 11, 12, 30, 31, 34, 35, 36, 97
국군외상센터 179
국군의학연구소 120
국군포로 215, 217, 218, 302
국무위원회 18, 21
국방개혁 16, 34, 35, 37, 38, 39, 88, 89, 90, 113, 175, 274, 277, 278, 304, 307
국방개혁 2.0 32, 35, 37, 38, 59, 70, 71, 73, 88, 89, 93, 114, 115, 116, 132, 134, 174, 178, 187, 189, 190, 194, 277, 293, 308
국방경영기획 평가단 119
국방과학연구소 96, 100, 141
국방동원정보체계 105
국방목표 33, 34
국방부 대테러활동 훈령 61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205
국방비 13, 15, 35, 92, 113, 114, 115, 117, 119, 242, 243
국방비전 33, 34, 35
국방 연구개발 99
국방예산 14, 94, 109, 113, 115, 120, 134, 189, 285
국방우주력 56, 57
국방우주협력 57
국방인권모니터단 183, 189
국방재정개혁 추진단 119
국방전직교육원 295
국방정보화표준 109
국방정신전력원 73, 81, 294
국방정책 12, 33, 34, 35, 36, 73, 98, 113, 136, 139, 143, 187, 188, 189, 190, 191
국방중기계획 38, 95, 115, 116, 117, 176
국방헬프콜센터 167, 168
국제 군수협력 50, 111, 112
국제연합 158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158
국제평화유지활동 15, 34, 112, 137, 145, 151, 158, 159, 160
국제평화활동센터 159, 160, 161
국제해양방위산업전 103
국지도발 대비훈련 76, 77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93, 296, 300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307
군사시설 보호구역 197, 198, 298
군사전략 17, 21, 33, 36, 87, 91, 97, 295
군수 혁신 119
군인복지 기본계획 190
군인연금 201, 204
군인연금법 170, 179, 204, 207, 297, 300, 301, 304
군정찰위성 47, 56, 91, 93, 118
군 책임운영기관 120
근접항공지원훈련 45, 77
글로벌 보건안보구상 10
기뢰작전 44

ㄴ

남북공동유해발굴 249, 254
남북 군 통신선 216, 256, 259
남북기본합의서 47, 214

ㄷ

다련장 43, 44, 46, 47, 92, 93, 240, 244
다자간 연합훈련 75, 76
대규모 전역급 종합훈련 76
대량살상무기 18, 21, 33, 51, 55, 75, 147, 148, 149, 150, 214, 246, 271, 273, 279, 289, 290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150
대륙간탄도미사일 13, 15, 16, 17, 19, 20, 210, 229
대잠작전 44, 93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65, 157
대함작전 44
독립국가연합 139
독수리훈련 50, 79, 126
동명부대 141, 151, 152, 153, 159, 291
동북아협력대화 147
동원훈련 105, 106, 115
드론 44, 116, 118, 197
드론봇 43, 44, 84, 91, 116

ㅁ

마일즈 장비 73, 74, 115, 117
메르스 9, 10, 64, 180
무기거래조약 149, 289
물류 혁신 110
미래사령부 14
미사일기술통제체제 148, 149, 290
민간개방 기본계획 120, 121
민간 조리원 116, 118, 172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35, 67, 79, 269
민·군 기술협력사업 111

ㅂ

방산수출 96, 100, 101, 102, 103, 112, 141, 158
방어제공훈련 77
방위력개선비 92, 97, 115, 116, 117
방위력개선사업 94, 304
방위비분담금 128, 129, 130, 285
방위사업 32, 35, 94, 96, 97, 98, 197, 302, 303
방위사업법 99, 296, 297, 298, 299, 300, 301, 303
방위사업청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41, 148, 149, 294, 296, 297, 298, 300, 307, 308
배합작전 23
병영문화쉼터 174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167, 168
부사관 학군단 71, 72
북대서양조약기구 17, 137, 141, 142, 143
북방한계선 21, 47, 48, 75, 211, 212, 214, 250, 273, 277
불가침부속합의서 47
비무장지대 116, 191, 211, 212, 213, 214, 215, 232, 233, 249, 252, 254, 255, 265
비셰그라드 142, 145

ㅅ

사이버공격 8, 18, 33, 35, 48, 60, 268
사이버사령부 14, 16, 59, 60, 86, 223, 274, 278
사이버안보 59, 60, 86, 142, 145
사이버위협 9, 10, 31, 32, 36, 59, 60, 68, 91, 274
사이버작전사령부 60, 86
상호군수지원협정 112, 282
상호운용성 54, 108, 109, 126, 127, 139, 143, 272, 274, 279, 286
생물무기금지협약 56, 148, 289
생활 밀착형 피복류 171
서북도서방위사령부 44
서울 국제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전 102, 103
서울안보대화 61,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90
성과기반군수지원 110, 117
성실수행인정제도 100
소요검증 제도 94
수색 및 구조훈련 76
순항훈련 75, 76, 143
스톡홀름 합의 20
시차별부대전개제원 46
시험평가 94, 95, 97, 98
신속대응부대 44
신속억제방안 46
쌍룡훈련 78

ㅇ

아라우부대 157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10, 144, 147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10, 61, 66, 136, 138, 144, 146, 160
아시아 안보회의 136, 138, 144, 146
아크부대 157, 158, 159, 291
야외기동훈련 50, 79, 248, 269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 189
에볼라 9, 157

찾아보기

연합 대규모 항공전역 훈련 76, 126
연합토지관리계획 127, 128, 274
연합훈련 17, 61, 65, 74, 75, 76, 77, 78, 111, 126, 127, 139, 157, 158, 261, 263, 264, 266, 272, 279
예비군훈련 106, 117
예비군훈련대 117
예비전력관리기구 303
오쉬노부대 154, 159
온누리부대 158
외래검진센터 179
우주상황인식 57, 274
원격진료체계 107
유럽연합 8, 137, 141, 142, 143, 155, 156
유엔군사령부 128, 283
유엔 남수단임무단 153
유엔 레바논평화유지군 152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104
을지프리덤가디언 50, 55, 79, 262, 264, 265, 269
응징적 억제 53
인도·태평양 전략 8, 11, 12

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13, 24, 229
장거리 미사일 19, 20, 246
장거리타격폭격기 14
장병사랑 캠페인 19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55, 62
적극적 평화주의 12, 15
적정 국방비 113, 114, 115
전략군 22, 25, 244, 261
전략적 타격체계 53
전력소요검증위원회 94
전력운영비 115, 116, 117
전력증강 16, 18, 19, 38, 54, 91, 92, 93
전력지원체계 109, 111
전문 연구기관 111
전문학위교육 71
전사자 유해발굴 205, 206
전술정보통신체계 92, 93, 95
전시작전 대비훈련 76
전시작전통제권 32, 35, 36, 39, 43, 50, 80, 93, 108, 116, 118, 125, 127, 132, 133, 134, 269, 277, 283, 284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36, 39, 43, 50, 80, 93, 108, 116, 118, 125, 127, 132, 133, 134, 269, 283, 284
전투지휘훈련 74, 75
전환 · 대체복무 192
정비지원 혁신 110
정전협정 47, 130, 151, 154, 213, 263, 273, 308
정찰용 무인항공기 47, 86, 93
정찰위성 56
제공작전 45
주한미군사령부 46, 127, 128, 129, 269, 274, 279, 280, 283
중국군 유해송환 135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67
지상작전사령부 16, 43, 84
지역군단 84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67, 68
지원예비군 105
집단적 자위권 행사 15

ㅊ

참전사실 확인 심의위원회 206
청해부대 155, 156, 291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8, 9, 33, 37, 91, 114, 125
충무훈련 79, 105

ㅋ

칸퀘스트 훈련 78
키리졸브 50, 79, 126, 269

ㅌ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54, 118
태극연습 79, 80, 266, 269
통제보호구역 298
통합방위본부 67, 68, 79
통합방위사태 67, 68
통합방위지원본부 67, 68

통합방위태세 35, 67, 79, 269
통합전술지휘통제체계 22

ㅍ

팔레스타인 정전감시단 151
포괄적 전략동맹 124
폭력적 극단주의 8, 9
플루토늄 25, 227, 228

ㅎ

한국방공식별구역 15, 135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53, 54, 118, 273
한국형 전투기 92, 93
한러 해상사고 방지협정 136
한미 국방우주협력 실무그룹 57
한미군사위원회회의 124, 125, 133, 134, 271, 276, 278
한미 군수협력위원회 111
한미 사이버실무협의체 274
한미 상호방위조약 46
한미 생물방어연습 55
한미안보협의회의 51, 52, 111, 124, 125, 130, 132, 133, 134, 205, 271, 276, 281
한미연합훈련 263
한미 전시지원에 관한 일괄 협정 111
한미통합국방협의체 51, 52, 124, 271
한미 화생방 대응연습 55
한빛부대 151, 152, 153, 154, 159, 291
한일 국방교류에 관한 의향서 136
합동참모본부 42, 60, 98, 294, 300
항공차단작전 45
항공차단훈련 77
해외긴급구호대 65, 157
해외파병 상비부대 158
핵비확산조약 148, 227, 288
핵우산 51, 272
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 144
호국훈련 50, 78, 79, 266, 269
화랑훈련 55, 68, 79, 269
화학무기금지기구 56, 289
화학무기금지협약 56, 148, 289
확장억제 51, 52, 133, 272, 277, 284
환태평양훈련 76, 78

A

ADEX 103
ADMM-Plus 10, 61, 66, 144, 146, 160
ARF 10, 65, 144, 147
ASS 144, 146
ATT 149, 289

B

BCTP 75
BWC 56, 148, 289

C

C4I 22, 91, 93, 285, 286
CAS 45
CIS 139
CWC 56, 148, 289

D

DMZ 47, 191, 213, 232, 233, 264
DPKO 159
DSC 51, 52, 272

E

EDSCG 51, 272
EMP 92
EU 8, 137, 141

F

FDO 46
FE 50, 79, 126, 261, 263, 269
FTX 50
F-X 92, 93

G

GDACS 10

H

HEU 25

찾아보기

I

ICBM 13, 15, 16, 17, 19, 20, 210, 261, 275, 307
ICT 106, 116, 231
ISIS 8, 9, 273, 279

J

JAM-GC 13
JCPOA 9
JSTARS 77
JTS 80

K

KADIZ 15, 135
KF-X 92, 93
KIDD 51, 124, 271
KMEP 78, 264, 266
KR 50, 79, 126, 261, 263, 264, 269

L

LPP 127, 274, 285
L-SAM 86

M

Max Thunder 76, 126, 264
MCM 124, 133, 134, 263, 271, 274, 275, 276, 278, 280, 281
MDL 21
MILES 73
M-MOOC 72
MTCR 148, 149, 290

N

NATO 17, 137, 141
NDS 11, 12
NEACD 144, 147
NLL 21, 47, 267, 273, 277
NPT 148, 227, 288, 290
NSS 11, 12

O

OPCW 56, 289

P

PBL 110, 117
PESCO 8
PKO 15, 137, 138, 139, 159, 160, 273, 291
PSI 150, 273, 279, 290

R

Red Flag-Alaska 76
RIMPAC 76, 78

S

SAM 86
SAREX 76
SCM 51, 111, 124, 126, 130, 133, 134, 205, 271, 274, 275, 276, 278, 279, 280, 281, 282
SDD 144, 190
SLBM 13, 24, 229, 275
Soaring Eagle 76
SOFA 128, 280, 286

T

TICN 92, 93, 95
TPFDD 46

U

UAV 46, 106, 241
UFG 50, 79, 262, 264, 265, 269, 307
UNIFIL 152, 291
UNTSO 151

W

WMD 21, 55, 91, 118, 246, 272, 273, 279

Y

YRP 127, 274, 285

숫자

4D 작전개념 52, 53, 272
5 · 24 조치 216

QR코드 찾아보기

국방개혁 2.0
p37

대한민국 국군
공익광고
p42

육군 홍보 영상
p43

육군 드론봇
전투단 창설
p43

해군 홍보 영상
p44

해군 잠수함,
장보고-Ⅲ 도산
안창호함 진수식
p44

해병대 홍보 영상
p44

공군 홍보 영상
p45

독도 홍보 영상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
p48

국방 사이버안보
정책
p59

평창 동계올림픽 '신종
테러' 등 완벽 대비
p61

육·해·공군 사관생도,
해상 합동교육
p72

해군 동해상 전투탄
실사격 훈련
p75

공군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
p76

2017 해병대
코브라골드
(연합상륙) 훈련
p78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p85

공군 블랙이글스
홍보 영상
p103

2017 서울 ADEX
p103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
p104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
p125

2018 서울안보대화
p144

아덴만 청해부대
(홍보 애니메이션)
p155

70주년
국군의 날 행사
p165

어머니 모니터링단
현장 방문
p173

2018 국방예산
대토론회
p189

하와이에 보관 중이던
국군 전사자 유해, 68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p205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채택
p212

11년 만에 개최된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p212

북한 DMZ 내 GP 폭파
p213